



3년의 혁신
3개년 개혁
30년의 성장

함께하는 FTA

April 2016 vol.47

한·미 FTA 4주년 성과와 의미

TPP 이후 주목해야 할 사업환경 변화

한·중 FTA 발효 100일



한중FTA 활용, 1 3 8 0 차이나데스크에 다 있다!

'차이나데스크'는 한중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한중FTA 활용, 차이나데스크 상담은?

국번 없이 1 3 8 0

<http://fta1380.or.kr>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층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한국무역협회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T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ssociation

글 김선녀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하상섭 교수

FTA와 함께 중남미와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질 것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의 하상섭 교수는 〈함께하는 FTA〉와 함께해온 든든한 지원군 중 한 명이다. 매달 중남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어 세계 무역 경제를 읽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가 속해있는 중남미연구소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어문학, 정치·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중남미 지역 연구는 전인미답의 상태였습니다. 초창기 연구소의 설립은 지역 이해의 목적이 컸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기존의 인문·사회 과학의 학제적 틀을 뛰어넘어 자연과학과 인문사회학의 융합분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상섭 교수는 1990년 외대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영국으로 건너가 버밍햄 대학과 리버풀 대학에서 각각 국제정치경제와 중남미지역학을 공부했다. 현재는 학부에서 중남미정치를 강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과 환경정치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남미는 지정학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지만 그가 직접 경험한 우리와의 경제·문화적 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무척 가깝다. 한류 아이템이 이미 새로운 문화 상품으로 보급되었고, 우리와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볼리비아에서는 한국이 국가 경제 발전 모델이 되어 그곳의 미래 세대들에게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월 국제학술대회로 방문한 쿠바 아바나에는 한글을 공부하는 쿠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우리와는 국교정상화가 실현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KOTRA가 쿠바에서 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아바나 시내에서 한국산 자동차들을 자주 볼 수 있었을 만큼 경제 관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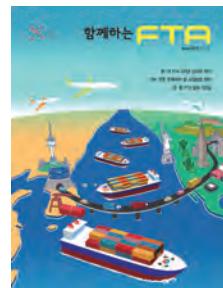
그는 현재 중남미 지역이 전자상거래 분야, 제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기술 노하우 전수 및 산업육성정책 지원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이 가능한 곳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한·중남미 FTA 확대와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❶



26

Contents

April 2016 vol.47



COVER STORY

한·미 FTA가 2016년 4월
발효 4주년을 맞이했다.
세계경기 부진, 유기하락
등 악화된 대외 여건
속에서도 2015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한·미 FTA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내었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6년 4월 1일(통권 47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People

- 01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하상섭 교수

Issue Focus

- 04 전 세계 FTA 추진 동향
06 한·중 FTA 발효 100일
08 Global FTA News

FTA Cartoon

- 10 한·미 FTA! 수출 이상 무!
안종만

Cover Story

한·미 FTA 4주년

- 12 인포그래픽: 한·미 FTA 발효 4주년 성과
14 한·미 FTA 활용 사례로 본 대미 수출 전략
16 한·미 FTA 4주년 실적 점검 및 발전 방향
박지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Special Report

- 18 한·중 FTA와 APTA 전격 비교 ②
이민선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20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현지 분위기
변상현 국제무역관 전문위원(한·베트남 FTA 활용지원센터)
22 말레이시아의 대 TPP관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24 TPP 이후 주목해야 할 5가지 사업 환경 변화

FTA & Company

- 26 2015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팀방:
(주)고려정밀(우수상)

FTA Study

- 28 미국 대선 임박,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30 한·중 FTA 비판세 장벽 이해 및 활용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32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⑪ 중국 지식재산권 계약 – 전리권 Ⅲ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34 실전 FTA 활용 노하우:
한·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
유영진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FTA활용지원실)
36 FTA 사후검증tip:
효과적인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작성법③
유영웅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FTA원산지지원실)

Art & Culture

- 40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⑦ 감시와 처벌

FTA News

- 42 한·중 산업협력 장관 회의 개최 외

FTA Square

- 44 FTA 정보&독자의 소리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무역협회

지난해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FTA 참여가 적극적이었으며, 올해는 TPP타결에 따른 영향으로 정체되어 있던 RCEP 등 메가 FTA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전 세계 FTA 추진 동향 2015년 신규 발효 FTA 11건 중 7건이 아태지역 국가

2015년 세계 주요국 FTA 추진 동향을 살펴보면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의 적극적인 FTA 추진이 두드러졌으며, TPP 타결 이후 메가 FTA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15년 FTA 추진 현황의 특징을 통해 2016년 우리나라의 FTA 세부 전략에 대해 새롭게 모색해야 할 때다.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핵심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지난 2월 서명을 완료함에 따라 이에 자극을 받은 RCEP 및 개별 국 차원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해 신규 발효된 FTA는 총 11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의 FTA가 아태지역 국가 사이에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 1위 상대국인 중국과의 FTA를 포함해 4건(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의 FTA를 발효하여 세계 주요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주요 수출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해 초 호주와의 EPA를 발효한 아래 미국이 포함된 TPP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타결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TPP가 발효될 경우 일본의 FTA 무역비중은 22.7%에서 35.5%까지 제고될 전망이다.(2015년 통계 기준) 한편 베트남은 지난해에만 TPP, EU, EAEU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서명까지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어 세계 경제통합 논의를 아태지역이 주도해나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주목해야 할 통상 환경의 변화로는 ① 메가

2015년 주요국 FTA 추진 현황



FTA 본격화, ② ASEAN의 부상, ③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추진을 꼽을 수 있다. 먼저 TPP 타결에 따른 영향으로 RCEP, TTIP 등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메가 FTA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TPP는 협상 당시 미국과 일본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면서 양국이 참여하고 있던 다른 FTA의 협상이 다소 지연되었던 바 있다. 따라서 TPP가 서명까지 완료된 2016년 이후에는 다른 협정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참여 중인 RCEP의 실제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RCEP은 지난해 연내타결에는 실패했지만 TPP 타결로 인해 RCEP 참여국 정상들의 동기부여 및 2016년 내 타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RCEP이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참여국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ASEAN 국가들의 부상

한편 ASEAN 회원국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확보 및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

루나이는 이미 TPP 서명을 마쳤으며 현재 일본 제조 기업의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태국을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TPP 가입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ASEAN 개별국 차원에서 EU와의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 싱가포르는 이미 서명까지 완료하였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협상 개시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ASEAN의 적극적인 FTA 추진이 지속될 경우 동 지역이 향후 중국을 대체할 만한 생산기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글로벌 시플라이체인 관점에서 ASEAN 개별 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추진

마지막으로 올해 추진될 예정인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논의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부터 한·칠레, 한·ASEAN, 한·인도 FTA의 추가자유화 및 개정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러한 논의가 업계의 FTA 활용률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품양허와 원산지 기준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ASEAN과 인도가 참여하는 RCEP 차원에서의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RCEP의 개방 수준을 높여 한·ASEAN, 한·인도 CEPA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❷



글 김은진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 FTA 발효 100일

대중 수출 감소한 가운데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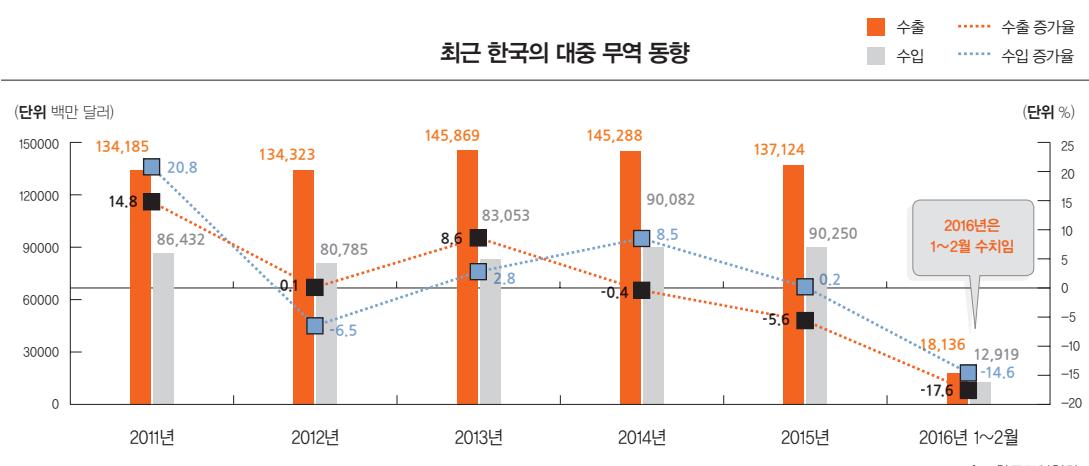
지난 3월 28일 정식발효 100일을 맞이한 한·중 FTA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중국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난 2개월간의 FTA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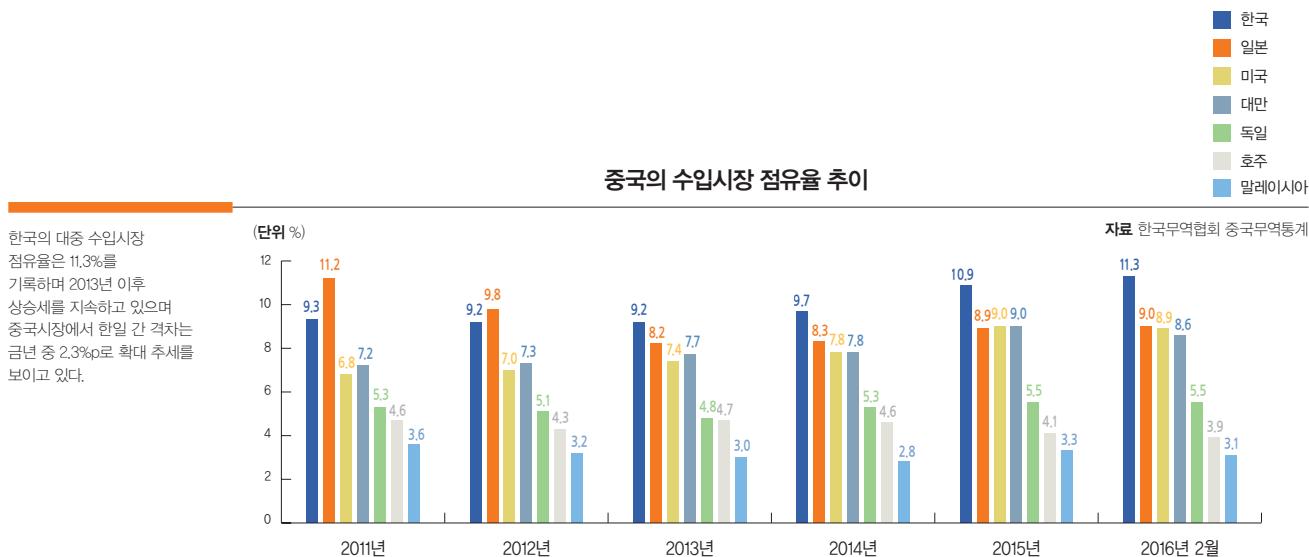
대중 무역 동향에 관한 무역업계 설문조사 결과 2년차를 맞은 한·중 FTA의
추가적인 관세인하로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경제 및 중국 내수 부진으로 2016년 1~2월 중 대중수출은 17.6% 감소했지만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 전체 수입이 15.8%에서 감소한 가운데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5년 10.9%에서 올해 11.3%로 상승했다. 또한 대중 수출의 감소와 함께 FTA 발효품목의 대중수출도 대체로 감소세지만 관세인하 폭이 큰 전자응용기기, 알루미늄, 금속공작기계, 편직물, 의류, 동제품 등에서 중국의 대한국 수인이 증가했다.

2년차를 맞이한 한·중 FTA는 FTA 활용 기업이 확대될수록 정부 및 무역 유관기관, 무역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먼저 통관, 서비스 개방, 비관세장벽 등 중국 측 이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함께 원산지증명 및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 48시간 통관시행을 활용해 대표적인 수혜품목인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중국 현지 유통망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품의 경우 10~20년 장기철폐 품목이 많은 만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헬스케어, IT서비스, 패션,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의 기술 및 자본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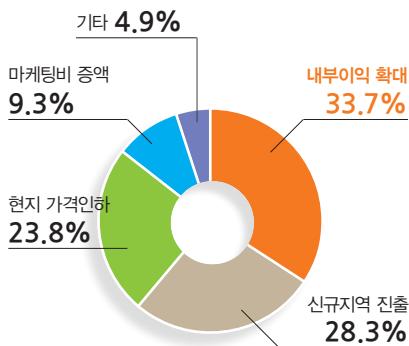
2016년 1~2월 대중 수입액은 16.4% 감소한 3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6% 감소한 181억 달러 수입은 14.6% 감소한 129억 달러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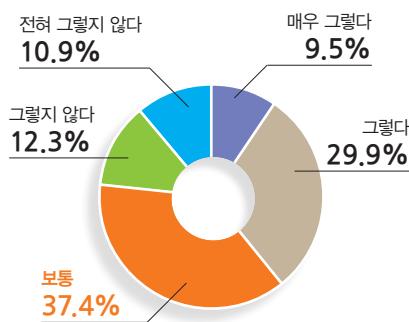
한·중 FTA에 대한 무역업계 설문조사

한·중 FTA 발효 이후 2016년 1월 26일부터 2월 18일까지 2개월간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한 설문조사로
총 495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했다. 조사대상은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랜덤 표본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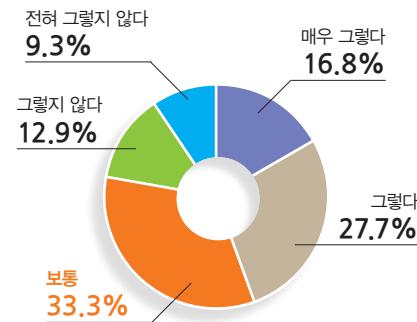
1 한·중 FTA 이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은?



2 한·중 FTA에 의한 대중 수출 증가 전망에 대한 생각은?



3 2년차 관세인하 시행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자료 한국무역협회

설문 결과 향후 한·중 FTA에 따른 수혜(이익) 확대 시 이를 진출지 역 확대 또는 가격인하보다는 내부이익 확대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발효 초기지만 수출업체가 한·중 FTA를 중장기적인 시장 확대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의지가 아직 높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중 FTA 이후 수출 환경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39.4%가 한·중 FTA로 인해 금년도 대

중 수출이 당초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의 어려운 수출환경을 감안하면 한·중 FTA가 대중 수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6년 1월 1일 2년차 관세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44.5%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관세인하가 금년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❷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Japan]

TPP 시장개방에 맞서는 일본 농수산업계 경쟁력 3대 방안



일본은 TPP 발효 후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량 고급 농산물 브랜드화를 비롯한 정부와 기업의 3대 방안을 발표했다.

적 품질 보증인 ‘할릴’ 인증을 취득했고, 오이타 현 츠쿠미 시의 방어 양식업자는 EU 수출 시설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② 물류 인프라 구축

야마토운수는 2013년부터 ‘국제 쿨 특급편’을 구축, 국내 각지에서 출하한 제품을 이를 뒤 홍콩 등지까지 택배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싼 가격으로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 대형 수산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보냉 국제 운송 서비스 제공을 검토 중이다. 항공편에 비해 운송비가 저렴해 야채 등의 운송에 적합한 선적운송의 경우, 현재 일본우선그룹에서 컨테이너를 저온·저탄소 상태로 유지해 선도 확보가 가능한 국제 수송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미쓰이상선도 2월 중순부터 자회사 MOL JAPAN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③ 일본 국내 시장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외국 현지 특유의 수요 파악

홋카이도 토키치 지방에서 생산된 마의 경우, 중국 한약재로서의 수요를 파악해 대만이나 중국계 이민자가 많은 미국 판로 개척에 성공했다. 유자가 특산물인 토쿠시마 현은 프랑스 요리 관련의 유자 수요를 파악,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을 검토 중이다. 한국 및 중화권의 설날 식재 수요 등 시기적 특수에 대한 정보 수집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❷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5년 농수산물 수출총액이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한 7,452억 엔을 기록, 3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발표했다. 신선도가 중시되는 고부가가치 식품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운송 조건이 유리한 아시아 지역에의 수출이 74%를 차지한다. 일본 정부는 당초 2020년으로 전망했던 농수산물 1조 엔 수출 목표의 조기 달성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 1월 2일 개최된 ‘농림수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워킹 그룹’ 제1회 모임에서는 국제적 안전기준에 대한 대응, 물류 정비, 수출 대상지역의 지역성에 맞춘 상품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5월 내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TPP 발효를 앞두고 소규모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량 고급 농산물 브랜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경작자의 세심한 배려와 관리로 생산되는 수제 고급 농산물로서의 브랜드화를 통해 절대품질을 평가받을 수 있는 수출 등 판로 개척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에 따른 일본 정부·기업의 3대 방안을 발표했다.

①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각종 관련 인증 취득

일본 최고의 쌀 명산지로 꼽히는 니이가타 현 기타우오누마 군의 JA(일본농협) 지부는 유럽에서 통용되는 식품 안전규격 ‘GAP’ 인증 취득을 통해 지역의 고급 브랜드 쌀 ‘고시히카리’의 유럽 수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키타 현 오오다테 시의 미곡 사업자는 이슬람권 종교



[Cambodia]

캄보디아, TPP 가입할까?

베트남의 TPP 가입으로 캄보디아 주요 사업인 의류산업과 신발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은 2005년 3.3%의 미국 의류 시장 점유율이 2014년 9.3%로 늘었고, TPP 가입 이후 더욱 증가해 가격경쟁력에 힘을 얻은 베트남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캄보디아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TPP를 보는 냉소적 시각

RCEP과 TPP 두 협정 모두 경제적인 협력이 아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을 이용한 세계 패권 다툼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1월 26일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John Kerry)는 캄보디아 총리 훈센(Hun Sen)을 만나 양국 교역과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우드로우 윌슨 센터(Woodrow Wilson Center)는 미국이 캄보디아를 TPP에 가입시켜 양국이 경제적 이득을 볼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를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캄보디아 내 전문가들은 미국 주도의 TPP 가입이 캄보디아와 중국과의 관계에 금이 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동남아 최빈국 캄보디아가 선진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을 가입하기에는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다는 시각도 있다. 챔 소팔(Chan Sophal) 캄보디아 정치학센터장은 “이런 파트너십은 선진국들이 부여한 조건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수준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계산과 평가를 치밀하게 해야만 하고, 이를 통해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ASEAN 내에서도 발전분야에 있어

서 많이 뒤쳐지고 있다. 넓은 무역 지역을 창조하는 데 큰 노력을 하고 있는 파트너십이지만, 이는 미국 일본이 중국을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훈센 총리 또한 아세안과 TPP를 둘 다 가입한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의 가입 동기를 묻고, 왜 TPP는 아세안 가입국의 일부만 가입을 시켰는지, TPP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캄보디아의 TPP 가입 시 한국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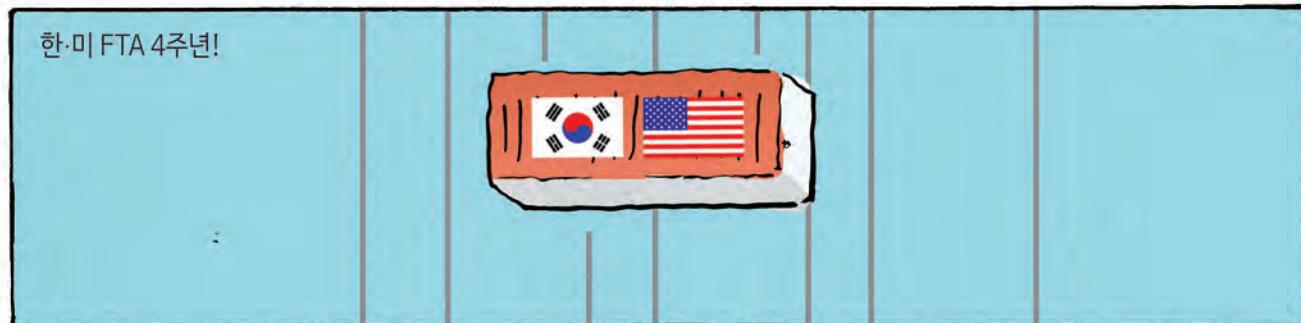
현재 한국 또한 캄보디아처럼 TPP 가입에 찬반이 많은 상황으로 두 국가 모두 TPP가 체결될 경우, 경제 협력 및 교류의 가능성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교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민감한 상황이다. 캄보디아가 TPP에 가입된다면 단기적으로 매출액이 가장 큰 미국시장에 수출을 중점적으로 늘릴 것이고, 타 국가로 나가는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 공장 설립이나 법인 설립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캄보디아산 제품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캄보디아 진출 기업들이 시장 확장을 통해 큰 이윤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의 기업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❷



캄보디아의 TPP 가입 여부에 관해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으며, 이는 캄보디아 수출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카툰 안종만

한·미 FTA! 수출 이상 무!



한·미 FTA 활약은 2016에도 주~욱 계속됩니다.



KOR·US FTA 4th Anniversary

한·미 FTA 발효 4주년 성과
한·미 FTA 활용 사례로 본 대미 수출 전략
한·미 FTA 4주년 실적 점검과 발전 방향

정리 김은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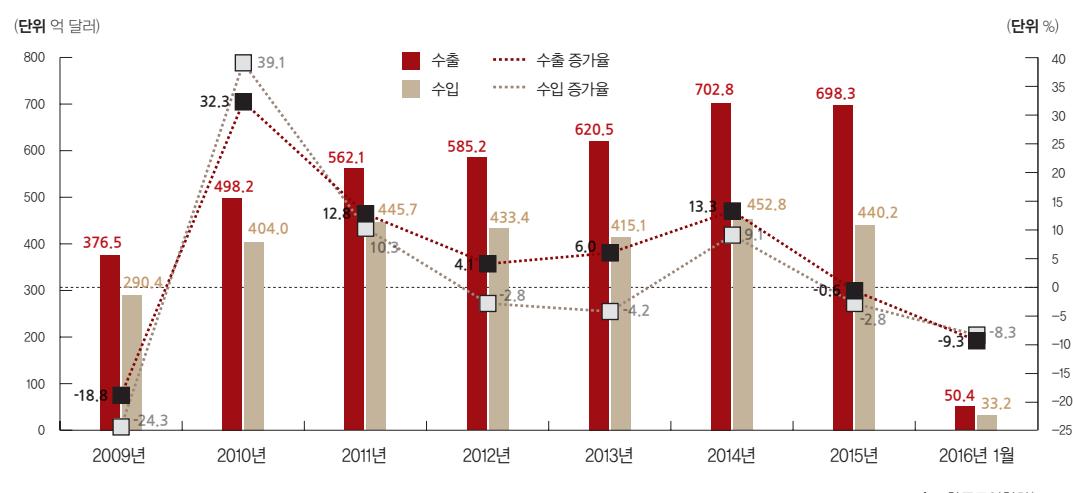
인포그래픽: 한·미 FTA 발효 4주년 성과

한눈에 보는 대미 수출 동향

한국의 대미 수출이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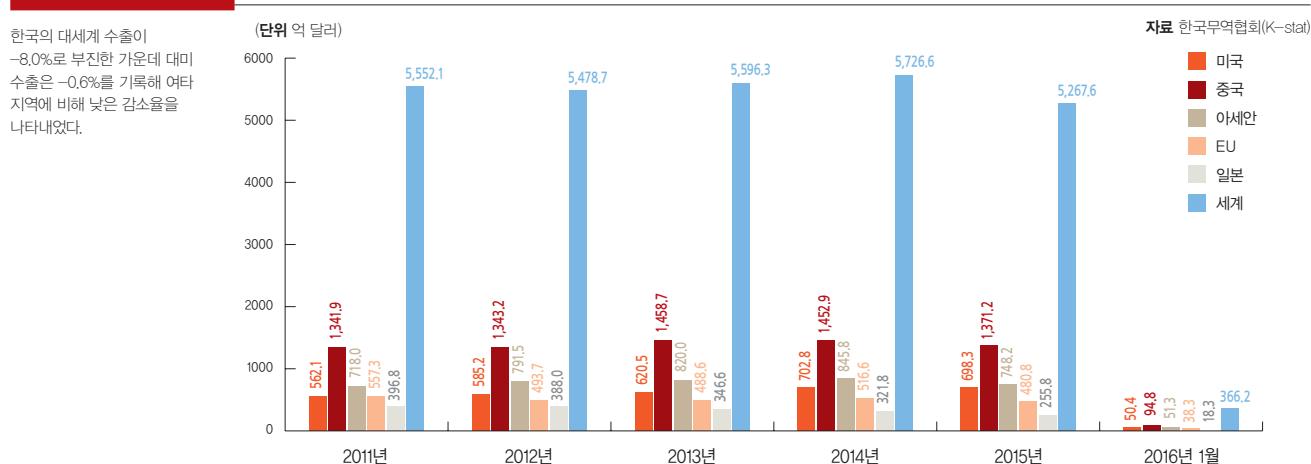
미국의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5년 FTA 수혜품목의 수출성과를 비롯해 대미 수출 업체수와 품목수가 나란히 증가하였다. FTA 수출 활용률은 발효 2년차부터 70% 이상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활용률은 71.1%였다. 한·미 FTA 발효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미 수출 동향을 통해 지난 4년간의 한·미 FTA 성과를 살펴보자.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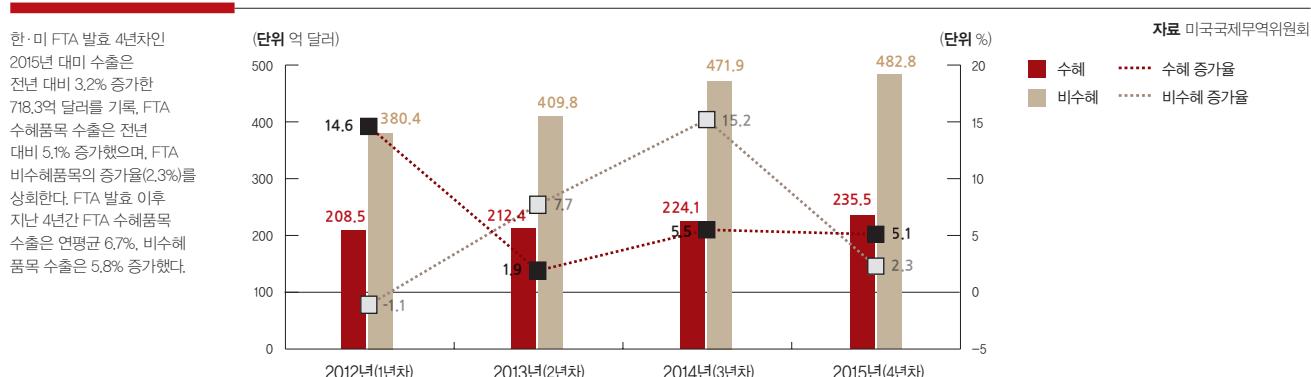


2015년 한국의 대미 무역액은 -1.5% 감소한 1,138.6 달리를 기록, 수출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698.3억 달리, 수입은 -2.8% 감소한 440.2억 달리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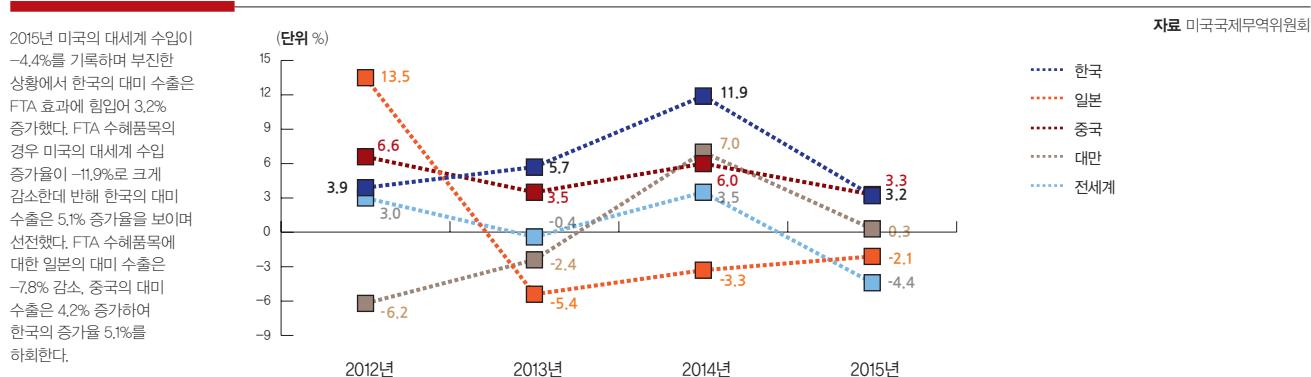
최근 한국의 주요국 수출 동향



FTA 혜택별 대미 수출 증가율(미국의 대한 수입)



한·미 FTA 이후 주요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미국의 수입) 비교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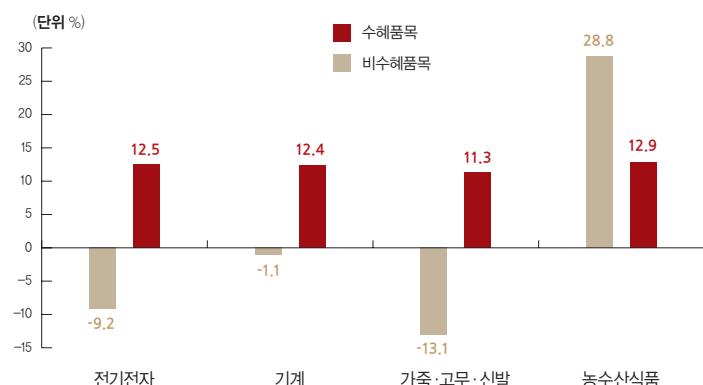
한·미 FTA 활용 사례로 본 대미 수출 전략

가격은 족매일 뿐… 차별화된 품질·디자인 필요

한·미 FTA 수혜품목에 대한 대미 수출은 지난 4년간 연평균 6.78% 증가함에 따라 전체 대미 수출 증가율을 상회한다. 이것은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미 FTA 수혜 품목의 미국시장 진출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관세 효과와 더불어 분야별로 사전 대비 사항들에 대해 체크해보자.

대미 수출 증가에 있어 품목별로는 2015년 기준 전기전자, 기계, 가죽·고무·신발, 농수산식품 등의 분야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기전자산업은 한국의 수출 주력품목인 휴대폰 및 부품, 반도체 등(기존 무관세 품목)의 수출 부진으로 비수혜품목의 대미 수출이 전년대비 9.2% 감소했으나, 유압식 변압기, 전기제어용 보드와 같은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기발생 보일러(374.3%)와 타이어의 대미 수출(18.2%)이 큰 증가를 보임으로써 기계류와 가죽·고무·신발 제품의 수출 증가를 각각 견인했다. 농수산식품의 경우 수출 규모는 크지 않으나,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특히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면류의 수출이 연평균 20.8%의 큰 성장을 기록했다.

2015년 한·미 FTA 주요 수혜품목 대미 수출 증가율



한·미 FTA 수혜품목의 미국시장 진출 성공 사례

1) LED 조명 S사

LED 조명 및 디스플레이 기업 S사는 사용자의 취향, 업무 성격 등에 따라 조명의 색 온도와 조도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을 개발해 미국 시장 진출에 도전했다. S사에서는 제품과 생산력의 우수성을 직접 보여주는 저인당식 마케팅의 일환으로 미국 내 주요 바이어를 한국 본사로 초청해 바이어를 대상으로 국내 생산시설 방문 및 기술교류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S사의 신기술과 제품에 대한 공격적인 홍보 전략을 실시했다. 또한 미국 LED 솔루션 기업 P사와 협력해 S사 제품의 주 기능인 '인간중심조명(Humand Centric Lighting)'의 우수성과 인체에 대한 영향 등을 논의하는 HCL 컨퍼런스를 후원하고, 관련 기관 발간물에 제품정보를 실는 등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의학계 및 업계 관계자에게 제품의 우수성과 객관적 영향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S사는 미국 시장 진



출 2년 만인 2015년 상반기까지 380만 달러의 북미 수출을 달성했으며 이것은 전년동기대비 570% 급증한 결과다. 현재 NBA 프로선수 락커룸, 병원, 로펌 등을 다루는 시공사와 꾸준한 거래를 하고 있으며 뉴욕시 공공교통부인 MTA 직원 대기실도 설치를 완료했다.

한·미 FTA 활용

HS Code 9405.40.8000,
관세율 3.9% → 무관세(즉시철폐)

미국 LED 시장은 Philips, Osram Sylvania, GE 3사가 전체 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75%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매우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한·미 FTA로 인한 3.9%의 관세 철폐는 가격 경쟁 면에서 의미 있는 혜택을 제공했다. S사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바이어의 관심을 획득함과 동시에 한·미 FTA의 효과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얻음으로써 대규모 수출성과를 달성하였다.

2) 폴리에스터 방직사 S사

고성능 섬유 기업 S사는 전통적인 방직사보다 흡한속건성을 보유해 드라이하고 쾌적한 촉감과 뛰어난 드레프스성, 영구적인 항균성을 제공하는 MVS 에어젯트 방식의 특수 폴리에스터 방직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북미 지역에 현지 마케팅 오피스 설립과 동시에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의 발판을 마련하고, 주요 브랜드 매장을 방문해 브랜드가 추구하는 원사소재에 대해 실시간 조사 및 자료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타깃 바이어 미팅 시 맞춤형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네트워킹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원사 및 원단 시장의 특성



을 인식하고 전시회에 참여하여 디너 프레젠테이션 행사 개최 등을 통한 바이어들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구축하였다. 2015년에는 80여 개 이상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과 상담을 실시했고, 16개 의류 브랜드업체 소싱 담당자, 30여 명의 타깃 바이어들을 발굴했다. 그 결과 2015년 상반기까지 전년동기대비 33% 성장한 150만 달러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한·미 FTA 활용

HS Code 5402.47.9020,
관세율 8% → 4%(10년 균등 철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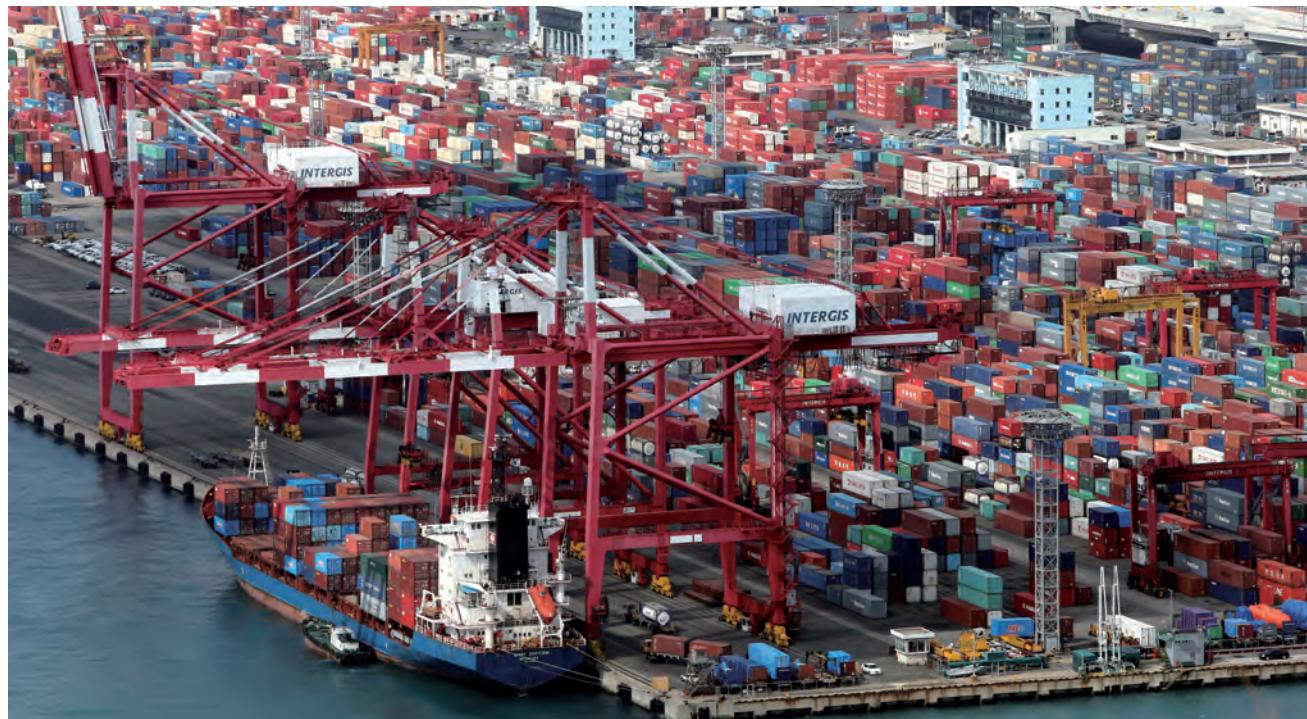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저임금 노동력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원사 수입시장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의 4% 관세 인하 효과는 품질 경쟁력에서 이미 앞서있는 한국 폴리에스터 원사를 바이어가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폴리에스터 원사는 한·미 FTA의 10년 관세 균등 철폐 품목으로 2021년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지속적인 가격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대미 수출을 위한 제언

R사의 바이어는 한·미 FTA의 관세 효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가격경쟁력, 차별화된 제품 디자인, 우수한 품질 등 분명한 사업 전략을 토대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 E사의 관세사는 섬유제품은 원사의 원산지증명 서류 등 까다로운 정보를 요구하므로 원산지증명 서류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미 FTA의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제3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돼야 힘을 유의해야 한다.

한·미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은 바이어가 관심을 갖은 상품에 대해 구매를 결정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하므로, 세계 우수한 상품들이 모두 경쟁하는 미국시장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격적 마케팅 활동, 현지화 전략, 바이어와의 장기적 관계 구축 등을 통해 제품을 시장에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❶

한·미 FTA 발효 이후 4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6% 성장했다. 미국의 전체 수입액이 같은 기간 연평균 0.43%에 그친 것과 비교했을 때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FTA 4주년 실적 점검 및 발전 방향

FTA 수혜품목 중심으로 대미 수출 견인

세계경기 부진과 유가하락 등 악화된 대외 여건 속에서 2015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한·미 FTA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발효 4주년을 맞이한 2016년부터는 한·미 FTA 발효 이후 4년간 유지되었던 승용차에 대한 2.5%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FTA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3.2%, 15년 만에 최고치 기록

한·미 FTA는 지난 2013년 3월 15일 발효되어 올해로 4주년을 맞이했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표방한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은 관세 철폐 5년차인 올해부터 미국 수출액의 95.7%에 대해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높은 개방 수준과 빠른 관세 철폐 일정으로 한·미 FTA는 발효 이후 양국의 무역을 보다 활성화하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미국 수입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성

과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718.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5년 미국의 전체 수입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하고,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2.1% 감소한 것을 볼 때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한국은 크게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지난해 15년 만에 최고치인 3.20%를 기록하였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경쟁국인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도 2015년 사상 최저치인 2.65%까지 좁혀졌다.

한·미 FTA 활용률 71.1%로 안정적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한·미 FTA 성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FTA 수혜품목이 대미 수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FTA 수혜품목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하여 일본(-7.8%), 중국(4.2%)에 비해 양호한 수출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FTA 수혜품목의 미국 전체 수입 증가율(-11.9%)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12.5%), 기계(12.4%), 고무(11.3%), 농수산식품(12.9%) 산업에서 FTA 수혜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유압식 변압기, 전기제어용 보드/패널 등의 전기제품, 산업용 보일러, 타이어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담배, 라면 등 인스턴트 면류와 같은 가공 식품류의 수출 또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 수출 활용률¹을 분석하면, 발효 1년차인 2012년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은 52.6%에 그쳤지만 발효 2년차부터 70.7%로 18.1%p 증가하여 발효 4년차(2015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는 235.5억 달러의 전체 FTA 수혜품목 수출 가운데 실제 FTA를 활용하여 수출한 금액이 167.5 억 달러에 달해 71.1%의 활용률을 기록하며 여타 FTA보다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FTA 활용이 가장 두드러지는 품목은 2.5% 관세가 철폐된 자동차 부품으로, 지난해만 38.5억 달러가 FTA 관세 혜택을 받고 수출되었다. 활용률은 84.9%이다. 고무타이어(관세 4.0%) 역시 13.9억 달러가 FTA를 활용하여 수출되었으며 활용률은 99.5%에 달한다.

2016년부터 승용차의 2.5% 관세 철폐 본격화

이처럼 한·미 FTA는 높은 개방수준과 빠른 관세 철폐 속도에 힘입어 우리나라 대미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2016년은 이러한 FTA 수출 증가 효과가 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주목받는 품목은 우리의 대미 수출 1/4을 차지하는 승용차이다. 한국 승용차는 지난 4년 간 연평균 19.0%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미국 수입시장에서 10.3%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는 발효 이후 지난 4년간 유지되었던 2.5% 관세가 철폐됐기 때문에 승용차의 FTA 수출 확대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월 미국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소형차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1.1% 증가하였으며, 수입 시장 점유율도 33.7%로 5.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다. 관세가 철폐된 지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FTA 활용률이 95.5%로 나타나 FTA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가 두드러진다. 주력 품목인 중형 승용차 역시 1월 중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한 12.6억 달러를 기록해 향후 수출 확대가 전망된다.

과실, 견과류, 주류 수입으로 소비자 선택 다양해져

한편, 한·미 FTA는 대미 수출 확대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 수입 품목 간 경쟁 심화 등을 통해 소비자 후생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과실류, 견과류, 주류 수입은 한·미 FTA 발효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오렌지, 레몬 수입에 힘입어 지난 4년간 과실류 수입액은 연평균 9.8%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국내 생산이 미미한 아보카도 수입이 크게 늘어 눈에 띈다. 아보카도는 주로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 30%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2013년부터 미국산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2015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한 약 420만 달러가 수입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피부 미용, 다이어트 효능에 대한 아보카도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가와 맞물려 2016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169.0% 증가하며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TPP 발효 전 지속적인 시장 선점 노력 필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에서도 한·미 FTA는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수출을 창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에는 대미 수출 품목수가 5,541개에 머물렀으나 발효 4년이 지난 2015년 현재 6,081개로 늘어났으며, 품목 수만 늘어난 것 이 아니라 참가 기업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미 FTA 전후 기업수를 분석한 결과 2011년 28,091개사에 머물렀던 대미 수출 기업은 신규 기업이 속속 참가하며 2015년 33,997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 중국, 대만, 유럽 국가 등 FTA를 발효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가격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극 활용해 미국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쟁관계인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TPP 발효 이전에 한·미 FTA를 활용한 지속적인 시장 선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❷

글 이민선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 FTA와 APTA 전격 비교②

유리한 세율 확인해 한·중 FTA와 APTA 적절히 활용해야

한·중 FTA와 APTA는 한국과 중국 간 무역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두 가지 무역협정이다. 지난 호에 다루었던 한·중 FTA와 APTA의 관세양허품목,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비교설명에 이어 이번 호에는 원산지증명서와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한·중 FTA와 APTA 원산지증명서 양식 상이

APTA 원산지증명서는 국가 또는 국가가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중 FTA를 비롯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방식과 마찬가지로 상공회의소 및 세관에서 발급한다. 그러나 APTA와 FTA는 서로 다른 별개의 협정이기 때문에 동일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사용할 수 없다.

APTA와 FTA 원산지증명서는 각각 지정된 통일 증명서식이 존재하므로 수출자, 제조자, 수입자, 상품명, HS 코드, 원산지결정기준 등 지정된 서식의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발행기관 및 인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인정된다. 따라서 수출 시에는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원본을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수입 시에는 수출자가 보내온 원산지증명서가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따른 작성요령에 일치하게 발급하였는지를 따져보고 발행기관의 인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APTA와 FTA에서는 국가별, 품목별로 양허율이 다르기 때문에 양허리스트를 참고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는 APTA와 FTA 모두 수출 시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APTA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

내까지로 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FTA가 선적일로부터 1년 안에 사후발급이 가능한 것과 차이가 있다. 한·중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는 소급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APTA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한다는 원칙적인 발급기한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APTA 원산지증명서는 단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게 되면 효력을 잃게 되어 통관단계에서 바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AP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업송장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 외에 수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부속서류로 ‘기준별 사실신고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 원산지 입증서류로서 원산지소명서, BOM 및 제조원기계산서 등이 필요하듯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서는 수출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를 비원산지 재료와 국내산 재료로 구분하여 모두 기입한 ‘기준별 사실신고서’가 필요하다. 원산지(포괄)확인서(국내제조(포괄)확인서 포함)는 FTA 특례법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투입된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APTA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APTA를 적용하는 많은 수출업체들이 투입된 원재료에 대해 한국산임을 보증받기 위해 제조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정관세 신청 시 APTA는 사후적용 불가능

FTA와 APTA는 모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고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PTA에 대한 협정관세적용 신청 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다. 즉, APTA 대상물품 수입 시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APTA 특혜세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관세 경정청구

를 통한 사후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하지만 APTA는 사후적용이 불가능하고 수입신고 시에만 협정관세 신청이 가능하다.

결국, APTA 적용대상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출자가 보내온 APTA 원산지증명서의 정합성을 빠르게 확인하여 수입신고와 동시에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APTA 양허품목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입수가 늦고 물품은 급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없이 협정세율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담보 제공 후 물품을 먼저 반출하여 15일 이내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하여 제출하면 협정세율로 수입신고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APTA가 FTA와 다른 것은 개성공단 역외가공 불인정,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비적용 등이 있다.

꼼꼼한 비교 통해 효율적인 방식 선택 필요

한·중 FTA가 올해로 발효 2년차를 맞는 가운데 APTA, 정보기술협정(ITA), 잠정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으로 중국 측 수입관세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세율을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한·중 FTA가 단계적 인하 또는 부분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양허제외품목 및 장기철폐 품목 등 일부 품목의 경우 APTA 양허관세 적용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 특히, APTA의 추가 협상도 지난달 타결되어 올해 발효가 예정되어 있어 관세가 추가 감축되며 일부 품목은 한·중 FTA 보다 관세가 더 낮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한·중 FTA와 APTA를 비교하여 APTA 대상품목 중 더 유리한 관세감축 효과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약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3근무일 내에 APTA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한·중 FTA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렇듯 중국에서 관세 인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우리 기업은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뒤에 가장 유리한 세율을 선택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❷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현지 분위기

호치민 FTA 지원센터 개소…교역여건 개선 기대

한국과 베트남의 산업발전과 민간교류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렸다.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교역 및 투자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그 결과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15년에는 한·베트남 FTA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서 양국 간의 교역여건에 있어 금상첨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양국의 산업·투자 측면뿐 아니라 민간교류까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업과 바이어 모두 한·베트남 FTA에 긍정적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베트남 바이어를 상대로 한 현지 분위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 177 개사 중 89.7%가 한·베트남 FTA 발효 후 한국과 수입 확대 또는 한국으로 거래선 전환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져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중국, 대만, 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하던 바이어 중 거래선을 한국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68.1%, 54.5%, 48.4%의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 FTA 효과에 대한 베트남 현지 바이어의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현지진출 한국기업 및 베트남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2015년 12월 KOTRA의 설문조사에서

도 관세·비관세장벽의 완화 및 원자재 및 부품조달에 따른 경쟁력 향상,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다양한 부문에서의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직수출, 현지생산, 한국 원부자재·부품 소싱 및 베트남 내수판매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동 설문조사를 양 국가별로 분석하여 볼 때, 한·베트남 FTA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 위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FTA 발효 전 가전제품(20~25%)과 화장품(10~20%)이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한류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던 것을 감안하면, 한·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와 공격적인 마케팅 병행 시 수출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베트남의 제 1위 투자국

베트남 입장에서도 주요 수출 산업인 농수산업 및 의류섬유제품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개방이 이루어져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교역 불균형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에서 원자재 및 자본재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베트남이 대한국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는 베트남의 산업생산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한·베트남 FTA 발효는 베트남 산업발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면에 있어서도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현재 약 4,500여 개의 한국기업들이 진



지난 2015년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양국의 무역교류가 활발해지면서 KOTRA에서는 지난 3월 4일(동일 하노이 센터 3월 2일 개소) 베트남 호치민에 ‘한·베트남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한·베트남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과 FTA 활용
세미나에는 현지 바이어를
비롯해 신문사, 국영방송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해
한·베트남 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출해 있다.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제 1위 투자국'으로서 한·베트남 양국의 경제 및 산업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여 왔다. 지금까지는 한국기업의 진출은 베트남을 '생산거점'으로서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베트남 시장 자체'를 목적으로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환경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는 현지 베트남 기업 또는 외국 기업 인수 합병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45.3%의 높은 수치로 나타나, 한·베트남 FTA 투자조항에 언급된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을 통한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안정적인 베트남 투자 환경을 조성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을 생산거점으로 두고 있지만 베트남의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점은 여전히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 입장에서는 한·베트남 FTA 발효로 관세 철폐·인하되는 부품들을 수출하거나 현지 공장에서의 생산을 확대해 글로벌 기업 납품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한·베트남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한국과 베트남 기업의 FTA 활용 욕구에 부응하고,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KOTRA에서는 3월 4일(동일 하노이 센터 3월 2일 개소) 베트남 호치민에 '한·베트남 FTA 활용지원센터'

를 개소하였다. 본 '한·베트남 FTA 활용지원센터'는 상품별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 통관절차, 비관세장벽 등 바이어 및 진출기업의 FTA 활용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기업의 밀집 지역, 현지 대형 전시회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 상담 서비스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FTA 업무 경험이 풍부한 한국 관세사와 현지 전담직원이 상주한다. FTA 활용지원센터 호치민 개소식과 FTA 활용 세미나에는 이른 아침부터 베트남 현지 기업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뒤늦게 참여한 베트남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런 상황에서도 140명이 넘는 인원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열기는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강연자에게 한·베트남 FTA에 관련된 질문공세로 이어졌다. 또한 베트남 현지의 유력 신문사와 방송사가 열띤 취재경쟁을 펼쳐, 베트남 최대 일간지인 Tuoi Tre 와 HTV, VTV 등 국영방송사를 포함한 주요 언론 16개사에 보도되어 한·베트남 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많은 베트남 측 귀빈들도 개소식 및 설명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였으며, 호치민시는 공식 웹사이트에 개소식 소식을 게재해 '한·베트남 FTA 활용지원센터'의 홍보를 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행사 참석기업도 베트남 현지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베트남 내에서 한·베트남 FTA 활용주체가 한국 진출기업보다는 베트남 기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한·베트남 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다. 개소 후 현재 FTA 활용지원센터에 접수되는 FTA관련문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련문의 사항의 대부분은 FTA 활용 시 혜택 확인(양허대상, 세율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수혜품목에 해당여부 확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 중에서 사전확인의 절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많은 베트남 현지 기업들이 한·베트남 FTA 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❷



말레이시아의 대(對) TPP관(觀)

새로운 생산 기지로 주목,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 기대

타결된 최초의 메가 FTA로써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은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수가 많은 만큼 국가 간 지리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유로 TPP라는 1개의 협정을 대하는 12개 참여국들 사이의 속내와 경제, 정치외교적 계산 또한 상이하기 마련인데, 이와 관련한 분석들이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 베트남 등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말레이시아다. TPP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어떠하며 해당 국가와 국민들은 TPP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매우 흥미롭다.

이번 TPP 협정에 참여 중인 ASEAN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를 비롯하여 베트남까지 총 4개국이다. 이 중 싱가포르는 이미 모든 TPP 참여국들과 양자 혹은 다자간 형태로 FTA가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추가적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모호한 위치에 있지만, 반대로 베트남은 TPP 협정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누적원산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신(新) 글로벌생산네트워크의 중심으로써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기대도 크다.

말레이시아: 국가 개관 및 대외경제

말레이시아 역시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쿠알라룸푸르다. 사바주(州) 주도(州都)이자 보르네오 섬의 서북쪽 남중국해 기슭에 있는 항구 도시 코타키나발루가 인기 관광지로 주목 받고 있다.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그에 따라 정부 및 법체계가 영국식에 가깝다. 반면, 국교는 이슬람교로,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족과 문화도 다양한 편이다. 앞서 말한 ASEAN 외에도 APEC의 회원국이기도 하며, 2015년 명목기준 GDP 33위를 기록(한국은 11위)했으나 1인 기준으로는 62위에 위치했다.(한국은 28위)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로, 2004년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70.3%로 세계 22위를 기록할 당시 196.1%의 무역의존도를 기록했다.(당시 1위는 홍콩으로 무려 325.4%를 기록했다.) 특히 말레이

시아 소재 중소기업의 42%는 해외무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FTA를 통한 무역장벽 제거와 시장확대는 말레이시아 국가경제에 필수조건이다.

말레이시아와 TPP

이렇듯 높은 무역의존도와 더불어, 중국, 한국, 대만, 태국 등과의 첨예한 수출 경쟁구도에서 말레이시아가 단독으로 참여하고 있는 TPP는 추가적이고 공격적인 시장개척에 있어서 분명 호재로 작용한다. 특히 베트남에 가려 조명을 덜 받았지만, 말레이시아 역시 TPP 및 메가 FTA 시대 새로운 생산 기지이자 외국인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워싱턴 소재의 페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 G.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도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가 TPP를 통한 수출과 GDP 성장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국가로 분석한 바 있으며, UN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서도 말레이시아가 2020년까지 1.46%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했다. 유럽계 금융 기관 크레딧스위스(Credit Suisse)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2025년까지 무려 5%의 경제성장을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상공회의소도 2025년까지 말레이시아 수출량 증가률을 11.9%로 책정했다.

TPP를 통해서 말레이시아가 가장 기대하는 분야는 전기전자, 팜오일 제품, 고무장갑, 합판, 목재 등이다. 이번 TPP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와 새로운 FTA 체결 효



베트남에 가려 조명을 덜 받았지만, 말레이시아 역시 TPP 및 메가 FTA시대의 새로운 생산 기지이자 외국인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TPP 가입 이후 무역적자의 누적을 예상하는 동시에, 특허권 강화로 인한 말레이시아 제약산업의 피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를 얻게 되어 이들 시장으로의 추가 진출 꿈에 부풀어 있다. 이어서,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섬유 및 봉제산업도 TPP를 통한 미국 수출 장벽 낮추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자동차 업계도 추가 수출을 낙관하고 있다. 특히 전자공업의 수준이 높은 말레이시아가 이번 TPP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와 TPP협정에 대해 이렇듯 장밋빛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TPP 가입 이후 말레이시아의 무역적자 누적을 예상하는 동시에, TPP를 통한 특허권 강화가 초래할 말레이시아 제약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게다가 TPP협정이 비로소 발효되고 나면 정부조달이나 국영기업 등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의 경험부족이나 역량미달이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미달이 결국 기업의

생존권 문제로 연결될 것이며, 건설업계도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의회 승인 완료에도 반대 목소리 여전, 내부단속 절실

서명 이후 TPP 참여국 중 유일하게 의회에서 승인까지 얻어냈으나,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일부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12개 참여국 간 경제수준의 고리로 인해 심각한 무역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협정이 재벌과 외국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부자들을 위한 협정이며, 말레이시아 내의 빈곤층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시위를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의 무역협상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신매매 3등급 국가였던 말레이시아를 미국은 앞장서서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상향 조정해주었고 결과적으로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TPP 서명에 성공했다. 말레이시아 내 주력 산업들도 여전히 추가 수출활로 개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❷

글 김은진 기자

지난 2016년 2월 4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태평양 주변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공식 서명식이 뉴질랜드에서 열렸다.
이제 2년 내에 전체 회원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그 60일 후부터 발효된다.



TPP 이후 주목해야 할 5가지 사업 환경 변화

무역규범 TPP로 재편될 것…새로운 룰에 적응해야

TPP 타결을 계기로 세계 통상환경의 지형 변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TPP 출범 이후에 대한 전망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부터 ‘회원국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비판 등 다양한 견해가 쏟아져 나온다. TPP 이후 세계 경제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예상되는 다섯 가지 주요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LG 경제연구원 김형주, 이지홍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TPP 이후 주목해야 할 사업 환경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TPP 타결은 세계경제 통합 움직임이 양자간 FTA에서 다자간 메가 FTA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4일 공식서명이 이루어진 TPP 출범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TPP 출범 이후 기업들이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와 같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손실 최소화 관점에서 TPP

참여를 서두르고, ▲미래형 혁신 산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하면서, ▲한국 경제와 산업의 미래 밑그림을 고쳐 그리는 동시에 ▲TPP가 요구하는 새로운 제도와 규제 환경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① 무역 블록 간 경쟁 심화

다자간 메가 FTA라 하더라도 그 형태와 특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FTA를 추진하는 목적이 역내 기

업 및 관련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의 국제 경쟁력 강화인 만큼 각국의 경쟁 우위나 주력 산업 특성에 따라 관세 장벽 제거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비관세 장벽을 강조할 것인지, 혹은 전통 제조업과 미래형 제조업 중 어느 산업에 유리한 FTA를 만들 것인지 등을 FTA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이 다양하게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런 여려 조건들을 고려해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해 주요 시장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 권한을 확보한 것은 맞지만, 양자간 FTA의 한계를 고려할 때 TPP와 RCEP과 같은 추가적인 접근 트랙 발굴이 필수적인 탓이다.

② 대 중국 전략의 불확실성 확대

중국의 TPP 대응 전략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TPP와 중국 사이의 연결 고리에 대한 우리의 시각 역시 여러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는 편이 낫다.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도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 전통 산업 영역의 경우, 계속 지원은 하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체질 강화를 요구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조립 등 단순 공정을 중심으로 베트남 등 역내 신흥국가들과 중국과의 생산 분업이 늘어나고, 일부 저부가가치 공정에서는 탈 중국화가 서서히 진행될 수도 있다. 전기차, 우주항공 등 미래 혁신 산업 분야에서는 TPP 내 선진국들과 중국 간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우리 기업들로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③ 게임의 룰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 등이 TPP 협정에 중요한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TPP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회와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

기도 하다. TPP 중소기업 챕터는 당사국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련 정보지원 강화, 서류 및 통관절차 간소화, 수출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TPP의 실질적 혜택을 향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정부 역할 축소 및 기업 책임 증가

TPP는 여러 항목에서 '일반원칙 준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배타적으로 보호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의 상당수가 효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각국의 환율정책과 국영기업 관련 항목이다. TPP 가입 12개국은 수출에 유리한 통화하락 유도 자체, TPP 회원국에 환율개입 실태 공개, IMF의 외환 보유액 통계작성 참여 의무화, 최소 3개월마다 외환시장에 개입한 상황 공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무 공동 선언을 공표하였다. 또 국영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관련 우선권 등 상업적 경쟁을 왜곡하는 어떤 특혜도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⑤ 사업 형태와 영역의 변화로 신흥 강자 출현

TPP를 통해 사업 형태나 아이템에 대한 각종 사전적 규제가 사라지고 참여 국가들 간에 제도 및 경쟁 환경의 격차가 해소되면(leveling) 실리콘밸리 등 선진국 일부 지역에 집중되던 창업의 바람, 즉 새로운 사업과 기술의 출현 및 융합 움직임이 TPP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사업 형태의 재정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의 전통적 제조기업을 대신해 소프트웨어 역량이 있는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거나 신흥 강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쟁력의 핵심이 제품 그 자체에서 제품의 업그레이드 혹은 제작을 통한 서비스의 수준을 좌우하는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면서 제조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필요하다.❷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깔끔한 흰색 작업복과 젊은 인력, 그리고 모든 공정을 다룰 수 있는 설비까지 고려정밀은 수출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경쟁력과 차별화 전략으로 내실을 다져왔다.



2015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탐방: (주)고려정밀(우수상)

한국의 ‘뿌리산업’, FTA와 함께 세계로 나아갑니다

프레스 금형을 제작하는 고려정밀은 생산량의 9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며 꾸준한 매출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 수출 전문 기업이다. 이들의 성장 요인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기술력을 통한 가격경쟁력 그리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실천하는 차별화 전력에 있다.

언뜻 공장을 떠올리면 어두운 작업복에 기름때 묻은 투박한 공간을 생각하게 된다. 광주 광역시에 자리하고 있는 고려정밀은 기존 공장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깔끔한 흰색 작업복과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장 내부, 산뜻한 컬러의 외관까지. 이러한 외적인 변화는 비단 보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바이어들에게 더 큰 신뢰와 믿음을 주어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작은 것에서도 차별화를 만드는 기업

광주광역시 진곡산업단지에 자리하고 있는 고려정밀은 주변의 많은 공장 가운데서도 유독 눈에 띄었다. 천편일률적인 회색의 건물 사이에서 유일하게 핑크와 블루가 섞인 컬러로 외관을 꾸며 놓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물의 1층부터 사무실, 그리고 거대한 기계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장까지 모든 공간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고려정밀은 정밀 프레스 금형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엔진이나 제어 장치 등 다양한 자

1



2



3



1 광주광역시 진곡산단에 위치한 고려정밀 공장 2 직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 출신의 젊은 인력들 3 공장 내의 기계와 모든 설비는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동차 부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형을 만드는데, 설계부터 가공, 조립 그리고 시제품을 위해 샘플을 테스트하는 프레스 과정까지 전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금형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납기’인데, 제작 과정에 변수가 많은 편이다. 일반 금형업체의 경우 설계는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는데 고려정밀은 내부에서 설계가 이루어져 납기를 단축할 수 있다. 또 완성한 제품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트라이아웃센터까지 제품을 옮기고, 수정을 위해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까지 줄일 수 있어 기술과 가격 면에서 타사와 비교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모든 공정을 다루는 금형 제작 기업은 곳은 광주 내에서 고려정밀이 유일하다.

한 가지 더 눈에 띠는 것은 직원들의 흰색 작업복이다. 흔히 공장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어두운 색이 아닌 깨끗한 화이트 컬러의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는 모습이 생소하면서도 신선했다.

“일본 혼다 등의 자동차 기업에서도 보통 흰색 계열의 밝은 색 작업복을 입습니다.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 때문입니다. 어두운 색 작업복을 입으면, 기름때가 묻어도 티가 나지 않아서 오랫동안 옷을 빨지 않는데, 흰색은 금세 더러워져 자주 옷을 세탁하게 됩니다.

또 그만큼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주의하게 돼서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려정밀의 나용석 대표는 흰색 작업복과 공장의 외관 색 등을 달리해서 기업의 차별화를 두려 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장 내에서 직원들의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고, 사내 전체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아주 작은 변화와 실천 하나로도 바이어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FTA 활용해 90% 이상 해외 수출

1994년 창립한 고려정밀은 1997년 법인으로 전환한 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일본, 필리핀, 브라질 등 해외로 수출을 시작했다. 창립 후 내수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후 수출에 힘을 쏟은 결과 현재는 90% 이상이 해외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2년에 접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89%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2년에 발효된 한·미 FTA는 최초검증 요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으로 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의 시련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증대응의 성패가 곧 회사의 존립위기라는 점을 간파하고 이후 자체적으로 검증대응 팀을 신설하고, YES FTA를 통해 대응방안 컨설팅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한·

미 FTA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검증에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또 고려정밀은 최초의 한·미 FTA 해결 사례로 떠오르면서 해외 바이어들 사이에도 신뢰를 인정받게 되었다. 여기에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도 해외 바이어들 사이에는 매력적인 구매력으로 작용했다.

“물론 중국 제품이 더 저렴하지만 품질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은 바이어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일본 등의 제품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 합리적인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한국 기업이 손꼽히고 있는 거죠.”

20년 전만 해도 산업 분야에서 금형이 차지했던 위치와 달리 이제는 3D 직종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면 나용석 대표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젊은 인력들을 고용하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 역시 단순한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예전 금형 사업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고려정밀의 경영목표는 ‘QDCC’, Quality(품질), Delivery(정확한 납기), Cost(가격), Clean(청결)이다. 38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고려정밀은 직원들 모두가 뚜렷한 기업 철학을 함께 실천하면서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단단한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다.❶

미국 대선 임박,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최악의 무역정책의 대명사 '스무트-할리 관세법'의 추억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가 약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일 경선 결과에 대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각 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공약들로 표심을 겨냥하고 있으나, 무역정책과 관련해서는 나름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클린턴, 샌더스 후보와 공화당의 트럼프, 크루즈 후보 등은 모두 일찌감치 TPP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 바 있고, 미국의 일자리 및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 향후 통상마찰과 무역위축에 대하여 우려하게 했다. 최악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으로 알려진 미국의 '스무트-할리 관세법'이 이쯤에서 회자되는 이유다.

대공황(Great Depression)

1914년부터 1918년까지의 제1차 세계대전과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존폐와 후대의 미래가 걸렸던 위기와 혼돈의 시기였다. 그러나 이 두 역사적 사건 사이에도 전쟁 끝지 않은 극심한 사회적 피로와 경제적 파탄과 재앙의 시기가 있었으니 흔히 잘 알려진 '대공황'이다. 이는 1929년 10월 뉴욕 월가 주식거래소에서의 주가 대폭락이 발단이 되어 1939년까지 약 10년여 동안 그 여파가 이어진 역사상 전무후무한 경제혼란기를 일컫는다. 물론 대공황의 원인이 대규모 주가폭락 하나였던 것은 아니므로 그 시기 전후로 경제위기에 대한 징조는 편재(遍在)해 있었다.

경제학에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가설들과 그에 대한 논쟁들이 가득하지만,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예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명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기약 없이 이어지자 각국은 이른바 균린궁핍화 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에 근거한 보호주의무역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가장 기본적인 국제경제학적 명제는 가장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방식들로 철저히 무시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관세 인상을 통한 무역장벽 쌓기였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스무트-할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대공황 전후로 각국의 내수기반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고 이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여 수입품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여기에 더하여 192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허버트 후버는 농산물 관세 인상을 하나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된 후에는 약속대로 농산물 관세를 올리는 대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내릴 것을 의회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 이를 가만히 수용할 리 없었고, 결국 강한 반발에 대응하고 공황기 국내경기 회복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의회 공화당의 리드 스무트(상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의원과 윌리스 할리(하원 세입수출위원회 위원장)의원의 주도 하에 해당 법안을 의회에 제출, 하원에서 찬성 264 대 반대 147로, 상원에서도 찬성 44 대 반대 42로 통과시켰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1930년 '스무트-할리 관세법'이었다.

그러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당시 미국의 폴 더글러스와 어빙 피셔 등 경제학자 1,028명이 모여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다룬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포드 자동차 회사로 잘 알려진 헨리 포드도 해당 법안을 '경제적으로 멍청한 법'이라고 일갈했고, JP 모간의 토머스 라몬트 회장도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후버 대통령 본인 스



1929년 10월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거래소에서 주가 대폭락 사태가 발단이 되었던 대공황으로 경기침체가 기약 없이 이어지자 각국은 관세 인상을 통한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스로도 이것이 무리한 법안인 줄을 몰랐던 것은 아니나 주변 압력에 의하여 해당 법안은 결국 서명절차까지 마쳤다. 결국 2만 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최고 40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되었고 수입품 전체에 대한 평균 관세는 59%에 달했다.

이러한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근본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해서 그 파산을 막아 실업자 증가를 막는 '이상(理想)'으로 유발되었으나, 이것은 '환상(幻想)'으로 끝나고 말았다. 미국의 스무트-할리법 조치에 다른 나라들도 경쟁 하듯 관세를 인상시켰고, 1929년부터 34년까지 국제무역은 66%나 축소했다. 목표와는 정 반대로 미국의 실업률도 1930년 법안 통과 당시 7.8%였지만, 31년엔 16.3%, 32년엔 24.9%까지 치솟더니 결국 33년 25.1%에 도달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실업자였던 셈이다. 이처럼 도미노처럼 번진 국가적 이기주의는 마치 도미노 쓰러지듯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균형을 흔들어 놓고 말았다. 이후 1932년 선거에서 해당 의원들이 참패하고, 정치권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였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이 대공황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지만, 일부 기여했고 또한 공황기의 장기화에 일조한 것만은 분명하다.

시사점

경기가 어려울 때면 각국이 국내산업 보호의 방법으로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보호무역이다. 그만큼 보호무역에 대한 유혹은 크다. 특히 정치와 연계되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된다. 지금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미국이기에 과거의 모습이 이채로워 스무트-할리 관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몇 자 적었으나, 한국도 과거 마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제한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었다. 2000년의 일이었는데, 그 대가로 중국 역시 휴대전화 수입제한조치로 맞서면서 큰 논란을 빚었던 바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아직 회복의 완숙기에 접어들지 못한 국가들은 여전히 보호무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올해 말 선거를 앞두고 연일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입에 올리는 이유다. 누구의 말인가에 대한 이견은 많지만 어쨌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꽤나 유명하다. 스무트-할리 관세법도 법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단순히 '악법도 법이다'라는 철학으로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다.❷

글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사진 한국경제신문

중국에서 과실, 육류, 주류, 분유 등 유기농 식품 시장이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근 한국의 유기농 식품 수출 역시 늘어나는 추세로, 중국 유기인증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중 FTA 비관세 장벽 이해 및 활용

중국 유기농 식품 시장 점점 커지고, 유기인증 검역도 강화

2014년 2월에 열린 제25회 국제유기농제품박람회에 따르면, 2015년 중국 유기농제품시장 규모는 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향후 10년간 중국 유기농 제품 생산량은 30~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산 유기농 식품의 중국 진출을 위해 까다로운 중국 유기농인증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해보자.

중국투자고문산업연구센터(中投顾问产业研究中心)가 발 표한 〈2010~2015년 중국 유기농 식품시장 투자분석 및 전망예측 보고(2010~2015年中国有机食品市场投资分析及前景预测报告)〉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중국 유기농업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연평균 20~30% 증가할 것이며, 전체 농산품 생산 면적 중 1~1.5%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은 장차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유기농 식품 소비 국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비 규모에 비해 매년 30%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유기농 식품으로는 음료, 차, 우유, 쌀, 과실, 육류, 식용유, 분유, 주류 등이다. 이들 제품은 대형 유통매장과 슈퍼마켓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다. 유기농 식품 인기 증가로 자국 브랜드인 하이커러, 농파파, 러 휘청, 뤄예즈 등 유기농 식품전문체인의 유통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입산 유기농식품은 주로 과실(오렌지, 사과, 키위, 체리 등), 주류(포도주, 맥주 등), 음료(과즙, 기능성 등), 견과류 등이다. 한국산 유기농 식품의 중국 진출은 아직 미미하지만 최근 들어 점차 늘어나는

중국 CQC(중국품질인증센터) 유기농인증 알아두기

중국에서 유기제품(식품)이란?

생산, 가공, 판매과정을 중국 유기농표준에 따라 생산·가공하여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유기인증이란?

인증기관이 유기제품의 중국표준과 〈유기제품인증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유기제품의 생산 및 가공과정에 대하여 평가·심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곡물, 채소, 과일, 유제품, 축산물, 벌꿀, 수산물, 조미료, 가공사료, 가공식품 및 가공섬유직물류 등이 포함되어있다.

유기인증의 조건은?

유기 원료의 함량이 95%이상인 가공제품(불과 소금체적을 제외한)에 대해 유기인증을 취득한 후 제품 혹은 제품 포장 및 라벨 상에 '유기'라는 글자를 표기할 수 있고 유기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중국 유기인증 - 中国有机产品认证

개요	의미 : 유기인증을 통한 중국 내 시장진입과 품질안전의 보장 시행 일시 : 新 규정 2014년 4월 1일 실시 소요 기간 : 약 90 working day *서류준비 및 시험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증서유효기간 : 1년(연 최소 1회 현장검사) *증서 만기 최소 3개월 전 갱신 신청
인증형식	인증 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심사 및 샘플링 → 제품테스트 → 최종 심사 평가 → 인증서 발급 → 판매증 신청 및 발급 → 사후 감독(연 1회 실시)
주관기관	CQC-중국품질인증센터 – 中国质量认证中心 CNCA-중국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 – 国家认监委 CIQ-출입국검역기구 – 出入境检验检疫机构(수출입검역기구)
대상품목	유기제품인증목록(有机产品认证目录)에 포함된 120여 제품 (곡물, 야채, 과일, 식물성오일류, 견과류, 향신료, 제당 및 기타식물, 식용 약재, 가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가공식품, 유제품, 사료, 술, 방직류 등)

추세다.

지난해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고급화를 무기로 중국 유기농 시장에 뛰어들었던 기업 가운데 중국 진출을 포기하거나 일반제품 진출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가 2014년 미국·EU 등과 체결한 '유기가

인증 취득 후 수입통관 시 제출자료

- 유기인증서 복사본 제출
- 유기 제품 판매증 복사본 제출
- 인증마크
(인증마크 및 인증기관명칭 두 가지 모두 표시)
- 제품라벨 등 관련 문서 제출

유기인증 미 취득 시 처벌 규정

수입제품이 중국유기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포장, 라벨, 제품 설명 자료에 유기, 오가닉 등 표기를 수정을 해야 하며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유기인증을 받지 않은 가공제품에 유기인증 표기를 하거나 중국유기인증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유기인증서 일시중지 혹은 말소되며 취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3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식품수출 제언

2014년 4월 1일 신 '유기제품인증관리방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유기농식품에 대한 검열 및 검사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향후 대중국 수출 시 관련 법령 사전 숙지 및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점차 까다로워지는 위생 검사 및 통관규정, 심사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한 뒤 안전한 중국 수출 행보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은 유기인증만으로도 국내 유기상품에 해당 국가의 유기인증 로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을 위해 관련 부처에서 중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을 중국과는 체결하지 않아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별도로 유기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하는 중국 유기농인증에 관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중국 유기농 식품 수출에 활용하도록 하자.❷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⑪ 중국 지식재산권 계약 – 전리권 Ⅲ

기술 양도 계약 시 ‘실시료’ 분쟁 소지 커, 장부열람, 감사 여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중국 전리권 실시 계약 체결 시, 기술수출입 가능기술 여부, 권리 유효성 및 공유 권리 관계 확인, 실시권 종류 및 그 기간과 범위, 실시료 산정 및 지급 방식, 후속 개량발명의 권리관계, 제3자의 권리 침해 처리, 제3자의 전리권 침해 대응, 실시 전리권 무효 처리 등에 관한 항목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 전리권 양도 계약

중국 지식재산권 계약–전리권 I

1. 전리권 계약의 특징
2. 중국 전리권 계약관련 법규
3. 중국 계약법상 전리권 계약
4. 중국 전리권 양도 계약
(3월호에 이어 계속됩니다)



5. 중국 전리권 실시 계약

중국 전리권 실시 계약은 기술양도 계약의 일종으로, 중국 계약법, 중국 전리법, “최고인민법원의 기술계약분쟁안건의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 대외무역법, 기술수출입관리조례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앞서 설명한 중국 전리권 양도 계약과 중복되는 내용들을 생략하고, 전리권 실시 계약이 갖는 특이한 규정이나 조항들만을 설명하도록 한다.

가. 전리권 실시 허여의 방식 및 범위

전리권에 관한 실시권은 독점 실시권, 배타 실시권, 보통 실시권 3종류가 있으며, 계약 상 명시적인 조항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법해석인 “최고인민법원의 기술계약 분쟁안건의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은 보통 실시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독점 실시권은 피허가자만 유일하게 실시할 수 있고 전리권자조차 실시 할 수 없는 권리이고, 배타 실시권은 피허가자와 전리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보통 실시권은 전리권

자가 피허가자 이외의 다른 제3자에게도 추가로 실시 허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리권의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실시 허가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시 행위 유형인 제조·사용·판매의 청약·판매·수입 등을 각각 구별하여 일부 실시 행위에 대해서만 허가를 할 수도 있다. 실시 지역에 대한 한정도 가능하나, 각 실시 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제한이 불명확한 경우가 종종 문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해당 실시 행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 지역을 명확히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나. 실시료 산정 및 지급 방식

전리권 실시 계약에서의 실시료는 전리권 허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 간의 갈등 또는 분쟁이



전리권은 일부 실시 행위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도 있으며, 실시 지역도 한정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내용이다. 특히 계약에서 규정한 실시료 산정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단순히 '매출액' 또는 '이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제외한 것인지,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순이익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기준을 명확한 생산수량 또는 판매수량 등으로 정하거나, 공제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하거나, 해당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수량 또는 원료량 등 보다 확실한 실시료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

실시료 지급 방식은 정액 실시료 지급과 경상 실시료 지급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정액 실시료 지급은 말 그대로 미리 정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경상 실시료 지급은 제품 판매 등의 실시 과정에서의 수익하는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계약법에 따르면, 전리권자는 실시에 관련하여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관련된 장부열람 비용, 나아가 실시료 감사 가능 여부 및 그 비용부담 등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

다. 후속 개량 발명에 관하여

피허기가 허가된 전리권을 실시하는 중에 그에 관련된 후속 개량 발명을 한 경우, 그 후속 개량 발명에 대한 사용권한을 규정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개량 발명은 해당 발명을 한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 개량 발명에 대하여 타 당사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개량 발명의 양도에 대한 우선 협상권 또는 권리 공유 관계 설정을 규정할 수도 있으나, "최고인민법원의 기술계약분쟁안건의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은 개량발명의 무상 제공의 강요, 불합리한 양도 조건의 설정 등을 불법적인 독점행위로 보아 해당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에

라. 전리권 침해 발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피허기가 허가받은 전리권의 실시행위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실시권자가 아닌 전리권자가 침해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약에서 다르게 약정할 수 있어, 대부분 전리권자는 실시행위로 인한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권리를 침해받은 제3자는 해당 계약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외형상 권리 침해를 함께 한 것이라면, 제3자는 허가자와 피허기자 모두를 상대로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대로 제3자가 허가받은 전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실시권의 종류에 따라 독점 실시권자는 단독으로 소 제기 또는 행정 신청이 가능하나, 배타 실시권자는 전리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가능하며, 보통 실시권자는 계약에서 달리 규정해야 단독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특히 전리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공동 전리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침해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는 피허기가 단독으로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계약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마. 전리권 무효심판 청구 금지 약정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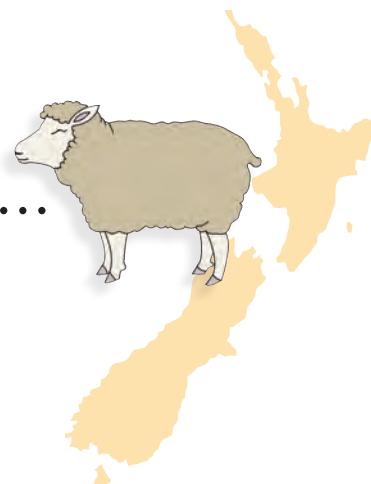
전리권자는 실시권자에 의한 허가 전리권의 무효심판 청구를 금지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 대외무역법에서 실시권자에게 무효심판 청구를 금지하는 약정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최고인민법원의 기술계약분쟁안건의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에서 역시 이를 무효로 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무효심판 청구에 대응하여 무효 시 지급한 실시료 반환 및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❷

글 유영진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FTA활용지원실)

실전 FTA 활용 노하우: 한·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

RVC는 공제법·직접법 중 하나로… 미소기준은 FOB의 10%로 규정

뉴질랜드는 아시아·태평양·오세아니아 지역 다수의 국가와 FTA 체결을 맺고 있고, 지난 10월 타결된 TPP 참여국이자 한국과 함께 RCEP에도 참여하고 있어 우리와의 FTA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지난 12월 20일에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 중 특이사항을 살펴보고, FTA의 전략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부가가치기준 해석방법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부속서3에 나와 있는 품목별 기준(PSR)으로서,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문의 전화를 자주 받는다.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을 보면 품목별 기준에 앞서 여기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두주(Headnote)를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본문에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의 산정방식으로 공제법(Build-down method)과 집적법(Build-up method)을 설명하고 이들 중 하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부속서 상 품목별기준(PSR)을 살펴보면 공제법과 집적법의 구분 없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RVC(35), RVC(40), RVC(30/40). 단순히 이렇게만 기재되어 있으면 공제법과 집적법 중 어느 방식을 적용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둘 중 특정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두주에서는 RVC(35)와 RVC(40)의 의미가 공제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해당 비율 이상일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RVC(30/40)과 같이 비율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적법으로 30% 또는 공제법으로 40% 이상일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협정문을 보거나 또는 FTA 포털사이트에서 원산지기준 조회 시 단순하게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참고하여 이해하기 바란다.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두주(Headnote)

(중략)

마.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35퍼센트 이상[RVC(35)]일 것이라 제3.4조에 따라 계산된 공제법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e) RVC(35)means that the good must have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35 percent using the Build-down method as calculated under Article 3.4;

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RVC(40)]일 것이라 제3.4조에 따라 계산된 공제법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f) RVC(40)means that the good must have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40 percent using the Build-down method as calculated under Article 3.4;

사.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집적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RVC(30/40)]일 것이라 제3.4조에 따라 계산된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직접법으로 30퍼센트 또는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g) RVC(30/40) means that the good must have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30 percent using the Build-up method or not less than 40 percent using the Build-down method as calculated under Article 3.4.

2.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흔히 이야기하는 미소기준(=최소기준=최소허용기준=최소허용수준)에 대한 내용으로,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다음과 같이 최소허용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 3.7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3-가에 따른 세번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고 적용가능한 세번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그러나,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위해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3.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부터 제14류**까지로 분류된 상품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 또는 소비되고 그 과정이 **단순한 혼합을 초과하는 과정**에만 **제1항**이 적용된다.
4.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필요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 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필요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특별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일반적으로 기술한다.

2
유지 및 보충작업은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의 보세지역에서 수행될 수 있다.

위와 같이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최소허용수준을 일반적으로 본선인도가격(FOB)의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HS 제1류 ~ 제14류에는 일반적으로 동식물 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상품의 경우, 세 번이 변경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있다면 단순한 혼합을 초과하는 공정을 거친 경우에만 최소허용수준을 인정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으나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단순한 혼합’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정문 본문에서도 각주를 사용해 범위를 부연하고 있다.

또한, 앞선 호의 한·베트남 FTA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뉴질랜드 FTA에서도 제50류부터 제63류에 분류되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최소허용수준을 중량과 가치기준으로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3. 직접운송원칙 및 입증서류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제3.16조에서 직접 운송에 대해 규정하고, 제3.26조에서 직접운송의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 3.16조 직접운송

1. 원산지 상품은 제3.2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그 상품은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시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비당사국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지 아니한다.
 - 가. 그 상품이 하역, 일시적 보관,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시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외에, **양 당시국의 영역 밖에서 어떠한 그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²⁾, 또는
 -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경우

제 3.26조 직접운송-준수

제3.16조에서 규정된 직접운송 규정의 준수는 적절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다. 이러한 서류는 관련된 상업 선적 또는 화물 운송 서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직접운송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허용되는 일반적인 공정은 해당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각주를 넣어 설명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에서는 제3국 경유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수출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직접운송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서 일반적인 상업 및 운송서류로 국한하지 않고 있어 각각의 경우에 따른 합리적인 입증을 위한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❷

글 유영웅 관세사(관세법인 네오)

FTA 사후 검증팁: 효과적인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작성법 ③

회사 내 작업지시서용 BOM은 FTA용으로 변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인 소명자료 작성 방법 중 제조자와 수출자 소개, 검증대상 품목의 품목분류에 대한 자료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출품에 대한 품목분류와 해당 HS 코드에서 정해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면, 이제 PSR(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대한 효율적인 서류 작성법에 관해 알아보자.

Materials to Demonstrate Product Country of Origin under the UK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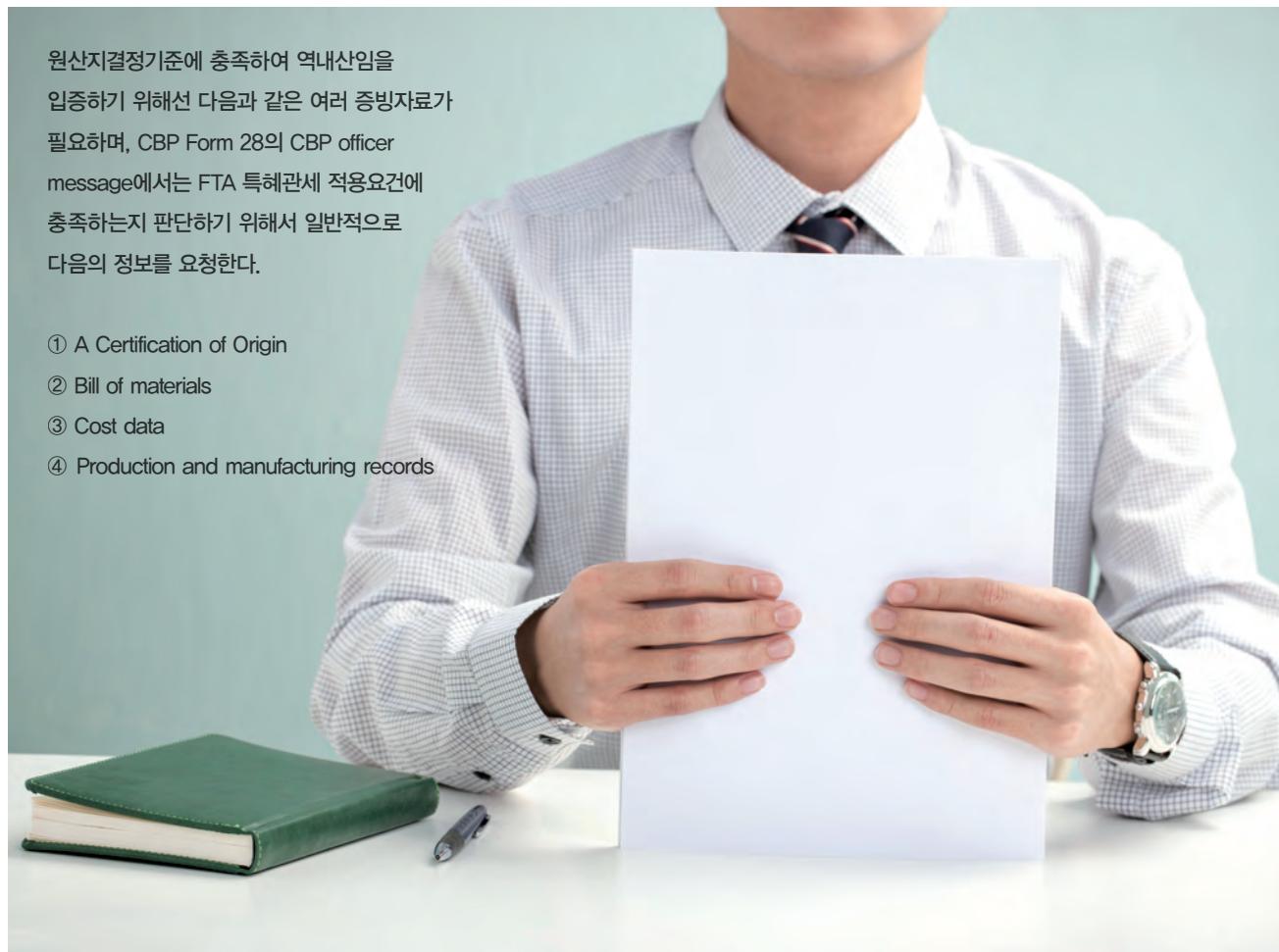
- I. About Exporter/Manufacturer
- II. 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
- III.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Certification under the UKFTA**
- IV. Additional Information
- V. Evidence/References

한·미 FTA 하에서의 물품의 원산지 소명 자료

- I. 수출자 / 제조자 소개
- II. 검증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
- III.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IV. 추가 정보
- V. 관련 증빙자료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여 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여러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CBP Form 28의 CBP officer
message에서는 FTA 특혜관세 적용요건에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요청한다.

- ① A Certification of Origin
- ② Bill of materials
- ③ Cost data
- ④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14. CBP Officer Message

[REDACTED] were imported into the U.S. an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claimed unde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This is notification tha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s verify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good(s) pursuant to 19 CFR§ 10.1026.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is to determine whether the good is originating per the rules of origin set forth in General Note 33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but not limited to, a certification of origin, bill of materials, cost data, as well a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이러한 자료들은 역내산임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이다. 따라서 검증자료 제출 시 CBP가 요청한 자료만 단순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료를 근거로 하여 역내산 물품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요청자료 별로 효율적인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1. A Certification of Origin

원산지에 대한 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어떠한 서류도 원산지증명서로서 효력이 있다. 실무에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서류든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 작성 시 기준에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상에 오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것이 좋다.

2. Bill of materials

Bill of materials(BOM)은 자재명세서 또는 소요원재료명세서 등으로 불리는 서류이다. 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원재료의 소요량, 단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인 제조회사에서 관리하는 BOM은 설계BOM

또는 작업지시서 역할을 하는 BOM 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BOM을 FTA용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① FTA용 BOM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다른 BOM과 달리 FTA용 BOM에는 품명, HS 코드 6단위, 단가, 소요량, 원산지, 구매처, 구매증명서류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 주의사항

(a) 구매한 원재료를 기준으로 작성

회사에서 관리하는 BOM을 분석해보면 원재료뿐만 아니라, 임가공비, 간접재료, 가공단계별 레벨 표시, 작업지시서 기능을 겸비한 BOM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FTA에서는 어떤 상태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역내에서 충분한 가공을 거쳐 완성품이 생산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기준으로 FTA용 BOM이 작성되어야 한다.

(b) 품번, 품명 등은 증빙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BOM 상에 기재된 원재료는 반드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구매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 따라서 BOM에 기재된 품명·품번 등이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해당 물품을 구매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품번·품명과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된 것이 일치하지 않거나, ERP등에 입력된 내용과 다른 경우도 있다. BOM상의 원재료와 각종 증빙자료 간에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 검증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별도의 조건표를 만들어 해당 품목이 동일한 것임을 설명하거나, BOM 상에 함께 표기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매칭시켜야 한다. 예시의 경우 내부에서 관리하는 품명을 'Internal Part Name'에 기재하고, 거래명세서 등에 표기된 품명을 'Part name of Purchase invoice'로 기재하였다. 실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에는 품명 등이 한글로 표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매칭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거래명세서 사본에 내부관리 품명을 별도로 표시하여 검증요원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Bills of Materials

Description of Goods: STROLLER PART(HS 6 digit : 8715.00)
 Model : elegance plus
 Applicable FTA : KOREA-US FTA (UKFTA)
 List of Materials

S/N	Part number (Internal)	Internal Part Name	*Part name of Purchase invoice	HS Code (6 digit)	Origin	Q'ty	Unit	Unit Price (KRW)	value (KRW)	Composition (%)	Manufacturer	Supplier	Document of Proof	supplier's Tel number	remark
01	10100	Nylon	00 ox	N2100 62	5903.20	unidentified	y	Blind	Blind	79.0%	삼성화재	한국화재	Invoice or P/O	82-541	refer to att#05-01
02	20100	poly carbonale film	C 0	3920.61	unidentified	0.04	m2	Blind	Blind	13.0%	(주)아트리얼	(주)아트리얼	Invoice or P/O	82-617	refer to att#05-02
03	20100		일시_ *100)	3920.49	unidentified	0.04	m2	Blind	Blind	5.0%	우리성	우리성	Invoice or P/O	82-72	refer to att#05-03
04	10100	Nylon	nylon	5407.42	unidentified		y	Blind	Blind	1.0%	스포츠라	스포츠라	Invoice or P/O	82-561	refer to att#05-04
05	80100	plastic	필수_ #CF	9807.19	unidentified		y	Blind	Blind	1.0%	한국화재	한국화재	Invoice or P/O	82-766	refer to att#05-05
06	30100		마니페스	59515	unidentified		pc	Blind	Blind	0.1 under	신성	신성	Invoice or P/O	82-504	refer to att#05-06
07	10100	Velcro tape	벨크로	5801.31	unidentified		y	Blind	Blind	0.1 under	동성	동성	Invoice or P/O	82-544	refer to att#05-07
08	20100	Sticker	S고정(색)	3926.90	unidentified		pc	Blind	Blind	0.1 under	여정	여정	Invoice or P/O	82-522	refer to att#05-08
09	10100	rubber band	10100	5407.92	unidentified		m	Blind	Blind	0.1 under	주제유	주제유	Invoice or P/O	82-505	refer to att#05-09
10	10100		40510 LOR	5401.10	unidentified		pc	Blind	Blind	0.1 under	자연재단	자연재단	Invoice or P/O	82-573	refer to att#05-10

Value of Origin materials
Value of non-origin materials

Blind
Blind

* Please refer to highlighted on tax invoice or P/O

Date :
Declarer : Inyoung You
Position : General Manager

Total Kids Corp.

President Sung Eum Cho

* 원자료 주문서나 거래명세서상에 회사에서 관리하는 품번으로 기재하도록 구매처에 요청하는 것도 효율적인 FTA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c) 모든 원자료의 HS 코드 6단위 기재

BOM에 작성된 원자료의 HS 코드를 6단위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세번변경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품명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물품인지 확실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구매한 원자료의 상태에 대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완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할 경우 HS 코드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HS 코드는 기본적인 정보이므로 기재하지 않으면 FTA 원산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d) 필요한 원자료에 대해서만 원산지 기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필요한 원자료 즉,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자료나 부가가치 비율을 충족할 정도의 원자료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KR'로 기재하고 나머지는 'UNKNOWN(미상)'으로 기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원산지를 'KR'로 기재한 원자료에 대해서는 구매증빙과 함께 한국산 원자료임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원산지확인서' 또는 '제조자진술서' 등의 증명서뿐만 아니라 필요시 원자료 구매처로부터 BOM, 제조공정도 등을 수취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UNKNOWN'으로 처리한 원자료에 대해선 구매증명만 하면 되므로 효율적으로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e) 단위의 일치

원자료 리스트 작성 시 주의하여야 할 부분으로 많이 실수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단위의 기재 요령이다. 완제품의 단위가 unit이나 pc라도 원자료의 단위는 다른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 원자료에 적합한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원자료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단위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f) 원자료 소요량·단가 등 중요 정보의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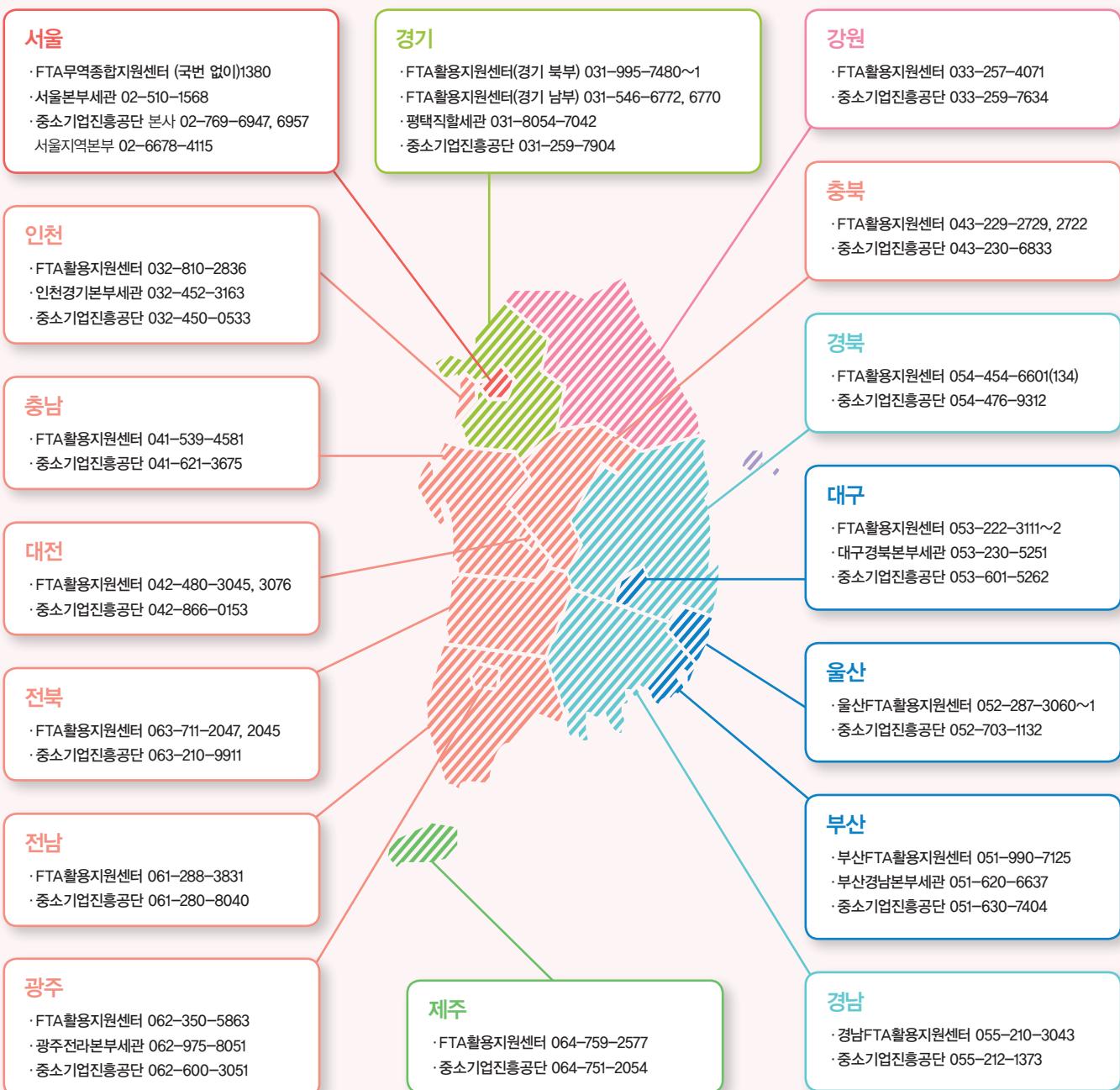
원자료의 소요량이나 단가 등의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므로 수입자가 알지 못하게 해야될 경우가 있다. 검증 소명자료는 수입자를 거쳐 CBP에 제출되므로 중요 정보인 경우 blind 처리를 하고, 필요시 CBP에게 직접 제출하겠다는 메시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예시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는 품목이었기 때문에 단가정보는 불필요할 것이라 판단하고 BOM 상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소명자료에는 CBP의 요청 시 직접 CBP에게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실제 검증에서도 CBP의 추가자료 요청 없이 검증에 성공하였다.❷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글 최효찬 자녀경영연구소 소장(문학박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감시와 처벌』은 감옥제도의 분석을 통해 근대 서구 사회의 전개에서 작동했던 권력과 지식에 대한 연계를 탐구한다.

푸코는 감옥의 역사가 아닌 권리가 인간과 신체를 어떻게 처벌하고 감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훈육과 지식-권력의 유착 관계를 통해 근대적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설명한다.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⑦ 감시와 처벌

우리 모두는 길들여진 '규율의 인간'으로 살아간다

필자가 학장시절 감명 깊게 읽었던, 헤르만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1906)』는 우리나라와 같이 '입시전쟁'이라는 말이 나도는 현실에서 절로 가슴이 아려오는 작품이다.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으로 마치 '시간기계'처럼 학습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스 기벤라트가 보낸 10대 시절은 이 작품의 무대인 100여 년 전의 시공을 뛰어넘어 '지금-여기'서 반복·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스 기벤라트는 어려운 경쟁을 뚫고 신학교에 들어가지만 엄격한 규율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고 만다. 한스는 작은 도시에서 촉망받던 라틴어학교 학생으로 신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두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결국 신학교에서 규율권력의 감시에 낙인찍힌 그는 시골로 돌아오지만 철

저하게 배제되면서 심한 심적 고통을 겪게 된다. 신학교의 규율이 명문화된 규율이었다면 그가 살던 작은 도시에서 그를 배제한 규율은 명문화되지 않은 규율이었지만 배제는 철저했다. 즉 한스 기벤라트는 촉망받던 학생→신학교 진학→학적 위반→퇴학→(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배제→기계공→자살(익사)로 이어지면서 파국으로 끝난다.

규율을 통해 탄생하는 근대적 주체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는 미셀 푸코가 『감시와 처벌(1975)』에서 말한 '규율(discipline)'에 의해 국가 권리가 어떻게 한 개인을 길들이고 훈육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푸코는 학교의 훈육을 규율권력이 행사되는 전형적인 예



미셸 푸코(1926~1984)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미셸 푸코는 기존 사회이론의 문제제기와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제기했으며, <감시와 처벌>을 통해 처벌의 종류와 감시방법, 감옥의 탄생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했다.

로 보면서 이런 권력이 사회 전체에 침투해서 현대사회를 규율권력이 편재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간다고 본다. 즉 규율권력은 개인을 억압하고 권력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유순함과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가령 세부적 규제, 연습, 훈련, 시간 사용, 평가, 시험, 기록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길들이고, 특정 목적에 맞도록 만들어낸다. 규율이란 길들여진 신체를 만드는 여려 다양한 기법과 전술을 통틀어서 의미하는 것이다. 감옥뿐만 아니라 군대, 학교, 병원, 작업장, 가정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규율이 생산·수행되며, 이를 통해 규율은 복종하고 훈련된 신체, 길들여진 신체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일들로부터 근대적 휴머니즘의 인간이 탄생하게 된다. 규율이 개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규율권력은 효과적인 훈육방법을 통해 근대적 주체를 만들어낸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훈육하고 지식과 능력을 생산하며, 군대에서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 군기가 잡힌 군인을 만들어낸다. 또 감옥에서는 격리와 노동, 치료와 규범화를 통해 범죄자를 교정한다. 규율권력은 개개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질서를 지켜나가도록 하여 '외부적 강제 없는 지배', '강제적 통제 없는 통제'를 실현한다. 그런데 이성에 바탕한 근대 서구의 휴머니즘은 규율권력에 의한 순종적인 인간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과는 거리가 멀게 된 것이다. 인간의 자유를 발견한 근대 계몽주의 시대가 알고 보니 또한 규율을 '발명'한 시대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근대 사회는 규율에 의해 순종적인 신체를 만들어낸다. "인간의 신체는 그 신체를 파헤치고 분해하며 재구성하는 권력 장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의 '권력의 역학'이기도 한 '정치 해부학'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해부학'은, 기술적 방법으로 속도와 효용성에 의거하여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신체를 장악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규율은 복종되고 훈련된 신체,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낸다."

사회라는 또 하나의 파놉티콘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내는 규율권력은 푸코가 '권력의 미시 물리학'이라고 부르는 방식에 따라 작동되는 것이다. 이때 푸코는 권력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전통적인 견해를 비판한다. 권력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무엇이 아니다. 권력이란 국가에서 유달리 크게 응집되는 힘의 효과일 뿐이다. 밀하자면 권력은 대통령이나 총리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옥의 죄수들을 다루는 이러한 규율의 기술은 병영, 병원, 공장, 학교 등의 소단위 권력체제를 통해 점차 확산되었고, 마침내 전 사회가 내면화된 '감옥형 사회'가 되어 관찰되고, 기록되고, 분류되고, 유형화되고,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감시는 위계질서적 감시를 당하는데 그 정점에 서 있는 이들이 바로 미시 물리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님, 상무님, 사모님 등 갑질 논란은 바로 이 권력의 미시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단위 권력체제에서는 누구나 권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권력의 미시 물리학'이 작동한다고 푸코는 주장한다.

'감시와 처벌'은 감옥제도의 분석을 통해 근대 서구 사회의 전개에서 작동했던 권력과 지식에 대한 연계를 탐구한다. 푸코는 벤담의 파놉티콘(Panopticon) 개념을 이용하여 원형감옥의 위계질서적 감시체제를 설명한다. 이때 푸코는 감옥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인간과 신체를 어떻게 처벌하고 감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훈육과 지식-권력의 유착 관계를 통해 근대적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기술한다. "이와 같이 종래와 다른 처벌 방식(공개적 처벌에서 구금으로의 전환)이 도래한 결과로서 사형 집행인, 곧 사형수의 고통에 관한 직접적인 해부학자 대신에 등장한 것이 일련의 전문가들이었다. 곧 간수, 의사, 신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육학자들이었다."

아울러 푸코에게서 순수한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은 권력에 봉사하거나 권력에 의해 담론으로 생산되고 유통될 때 존재한다는 것이다. 푸코는 이러한 맥락에서 법의학, 형법학, 사회학, 심리학, 범죄학 등 각종의 인간과학들이 어떻게 '지식-권력'의 그물망으로 형성되어 있는 근대 서구 사회에서 기능했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즉 우리는 권력을 통해서 진리가(眞理價)가 생산되는 메커니즘을 빠져나올 수 없으며, 역으로 진리가의 생산 없이는 어떠한 권력도 행사될 수 없는 것이다."

푸코는 감옥은 사회의 축소판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 어디에서든 감시당하는 인간은 규율과 훈육으로 길들여져 순종적 신체에 머무르고 만다. 우리도 지금 위계질서적 감시체제인 파놉티콘에 살고 있다. 생각할수록, 끔찍하다! ☺

정리 김은진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FTA NEWS



한·중 FTA 시대의 경제·통상, 산업 협력 본격화 한·중 산업협력 장관 회의 개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공식 방문해 장관급 회담을 세 차례 개최했다. 양국은 지난 3월 18일 제2차 한중 산업장관 회의에서 주요 산업 협력채널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글로벌 공급망 참여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제2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는 지난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중 산업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양국 산업 분야 총괄 부처 간 협력 채널이다. 제1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는 2014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관련 통상 이슈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마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회부 부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보조금 지급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기업이 생산한 삼원계 배터리가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 사

고도 없었고 선진국에서도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배터리 안전성을 강조했다. 외국인투자기업 기대와 정책 신뢰를 침해하는 문제도 제기하고 안전성 평가에 한국 기업의 충분한 참여를 요청했다.

마오웨이 부장은 4월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해 보조금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로봇, 이차전지, 항공, 반도체 등 산업별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분야별로 관련 정책과 현황을 공유하고 민간과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공동 R&D 수행과 R&D센터 구축, 국제기준 수립 및 제·개정 참여 등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산업별 협력방안 추진상황을 이행하고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3차 한중 산업장관 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뉴질랜드 FTA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FTA 이행기구 운영지침 확정 및 농림수산 교육협력 약정



사진은 제18차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 모습

지난 3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한·뉴질랜드 FTA 첫 번째 공동위원회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가졌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발효한 지 정확히 3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발효 초기 단계에서 FTA 최상위 이행기구를 우선 가동함으로써 FTA 이행과 활용 단계에서 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FTA 체결 성과를 조기에 시현할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위원회의 수석대표로는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뉴질랜드 측에서 마틴 하비 (Martin Harvey) 통상협상국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공동위원회에서 'FTA 발효 후 이행상황 평가와 향후 계획', '양국 관심 분야별 추진현황 공유·협의', 그리고 'FTA의 차질 없는 이행과 활용을 위한 공동 노력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의 경우, 이번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양국 교육분야 이행기관인 우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과 '뉴질랜드 유학진흥청'(Education New Zealand)간 교육협력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우리 농어촌 청소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수의과학·산림 분야 뉴질랜드 유학 장학금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전망이다. 차기 공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며, FTA 성과 시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발효 1주년 성과 등에 대해 상호 평가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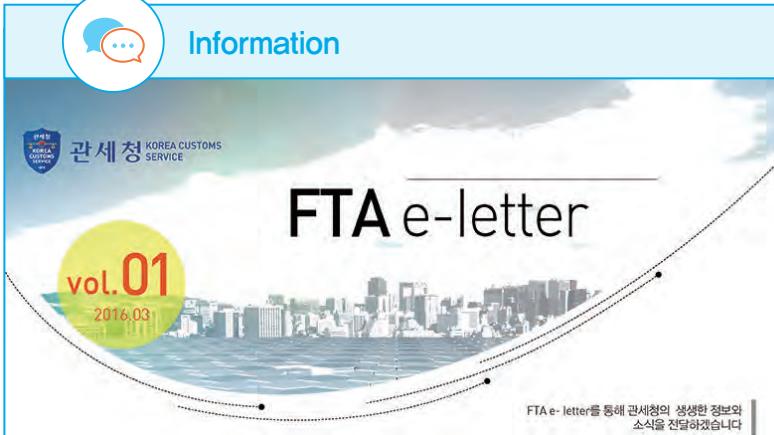
한·중미 6개국 회기간 회의 개최 상품 등 주요 챕터 협상 가속화

우리나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중미 6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회기간 회의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2월까지 3차례 협상(예비협의 1회, 본협상 3회)을 진행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협력, SPS, TBT, 협력 등 주요 챕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금번 회기간 회의를 통해 상품, 통신,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분야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고 협상을 가속화했으며, 특히, 우리기업의 대중미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양허)협상을 가속화하여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과 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에콰도르 SECA 제2차 협상 개최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7개 분야 협상 새로 시작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제2차 협상이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에콰도르측은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기존 FTA 용어 대신 다른 이름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여 양측이 SECA라는 명칭에 합의하였으나 내용은 FTA와 동일하다. 양국은 지난 2015년 8월 25일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에 SEC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고, 2016년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한·에 SECA 1차 협상을 개최하여 상품·원산지·통관·서비스·투자·무역구제·SPS·TBT 등 총 14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협상을 통해 1차 협상 시 논의했던 상품·서비스·투자 등 14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정부조달·지적재산권·협력·경쟁·노동·환경·분쟁해결 등 7개 분야 협상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❶

Information



FTA e-letter

vol. 01
2016.03

자유무역협정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해드립니다!

대중 수출기업 FTA 활용지원을 위한 소식지(뉴스레터) 발송

관세청은 대중국 수출기업 2만 개를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정보를 담은 소식지 'FTA 뉴스레터'를 이달부터 총 10회 동안 매월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소식지는 기업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기준, 급증하는 원산지 검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FTA 활용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지원방안으로 마련되었다. FTA 뉴스레터에는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직원들의 기업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현장감 있는 정보들을 '즉문즉답', '비즈니스 모델' 등의 다양한 꼭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즉문즉답'에서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준비 사항부터 사후검증 대비 법법까지 FTA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FTA를 준비 중이거나, 아직 활용하지 못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FTA 활용 성공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8일 1호 소식지가 발송되었으며,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이하 YES FTA) 포털(yesfta.customs.go.kr)에도 게재되었다. YES FTA 포털을 통해 신청할 경우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 비즈니스 모델 예시 |

A기업	공의관세사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원산지관리 지원을 통해 FTA를 활용해 6.5%였던 관세를 0%로 적용받아 기격경쟁력이 상승되어 매출액이 300%이상 상승
B기업	원산지검증을 기업의 원산지관리 상태를 종합점검하는 학습의 기회로 삼아 오히려 FTA를 활용한 수출이 증가

| 즉문즉답 예시 |

Q. 한·중 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관세청 'YES FTA 포털,* 접속 후, FTA 자료실에서 수출세율 또는 수입세율 조회를 통해 물품의 기본세율과 FTA특혜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yesfta.customs.go.kr>
(관세율이 5%→4.6%로 인하)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TPP 발효까지 앞으로 2년, 치밀한 전략 필요해'라는 기사가 가장 좋았어요. TPP가 무엇인지 이번 <함께하는 FTA>를 통해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어떤 태세를 취하게 될지 등을 각 나라 별로 제시해주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눈여겨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전행숙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매월 각국 간의 FTA 관련 새로운 소식을 알 수 있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번 호에 협정 별 원산지 결정기준 조회방법과 검증 대상 품목 구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이 나와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소연 서울시 강서구 가양3동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다 보니,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각 국가마다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 통관절차 등으로 FTA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 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함께하는 FTA>가 각 국가 간 다양한 협상능력을 강화하고 다채널 경로의 수출 확대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기르는데 좋은 길라잡이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전경욱 경기 평택시 청북면

도서관에서 읽게 되었는데 국제경제를 공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기사를 읽을 수 있어 챙겨 읽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이스라엘 FTA 추진과 의의를 가장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강미선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함께하는 FTA

April 2016 / vol.47 www.fta.go.kr

알림

독자엽서를 이메일로도 받습니다.
보내시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엽서의 질문 답변
내용을 적어서 mitypen@korea.kr로 보내주시면,
좋은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존처럼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함께하는 FTA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E-mail

□□□□□

전화번호



받는 사람

〈함께하는 FTA〉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3 0 1 1 8

〈함께하는 FTA〉는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공간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함께하는 FTA〉를 만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4월 26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FTA〉를 보신 소감은?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는 무엇이었나요?

이유를 적어주세요.

〈함께하는 FTA〉를 어디에서 보셨나요?

예) 은행, 관공서, 도서관 등

〈함께하는 FT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또는 FTA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정기구독(무료)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독자 신청 또는 기존 독자 주소 변경은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mitypen@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호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아래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함께하는 FTA〉 3월호
독자 이벤트 당첨자 명단

강미선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강정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김소연 서울 강서구 양천로
이양우 경기 김포시 하성면
이용준 전북 남원시 덕과면
이준입 경기 포천시 소흘읍
전경욱 경기 평택시 청북면
전행숙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한정광 서울 도봉구 덕릉로
황득규 부산 동래구 충령대로

※독자엽서 당첨상품 반송 시 1년 간
(우체국 배송자료 보관 시한) 보관합니다.



제13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The 13th International Fire & Safety Expo Korea

2016.4.27 수-29 금 exco (대구)

소방산업진흥으로

국민생활을 안전화하세요

품목

소화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화재예방, 개인보호 장비

전시회

- 300업체 1,000부스
- 전국 230여 개 소방관서 등의 1,000여 명 구매담당자와 품목별 구매 상담회
- 해외 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부대행사

- 취업설명회
- 제5회 전국 일반인 실페소생술 경연대회
- 제3회 소방안전퀴즈대회
- 소방안전 할인 마켓관

컨퍼런스

-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 소방장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세미나
- 안전성능시험자 실무교육
- 과학적 분석을 통한 화재저감 및 현장대원 안전사고 감소 방안 세미나
- 소방용품 권장내용연수의 효율적 운영방안 포럼
- 화화사고예방 세미나
- 소방기술자 교육(양성·승급) 제도 도입 공청회
- 회원사 지원 실무교육
- 제3회 청소년 소방안전교육 포럼 개최
- 제18차 정기총회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 소방안전기술·정책 세미나
- 소방홍보 뉴 패러다임 전략 개발 토론회
-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세미나
- 연수강좌(119구급대원 기술교육 등)
- 춘계학술대회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세미나
- 소방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세미나
- 제5회 대의원 워크숍 개최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소방안전기술 국제세미나
- 정기총회 & 한·일 국제세미나
- 구급상황관리센터 병원 간 전원조정업무 활성화 세미나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 제2회 전국 화재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 소방정보통신 실무협의회 개최
- 중앙·지방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운영개선을 위한 세미나
- 소방(R&D)의 현장적응성 및 실용성 제고 방안
- 간접구조 현장대응 역량강화 세미나
- 전국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세미나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